

제2026-73호 2026년 9월 8일(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주권도시 기본이 튼튼한 행복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경제도시 세계가 찾는 매력도시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6-267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738호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775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 (주)예플랜트
- 여수시 공고 제2026-2776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 건호이앤씨(주)
- 여수시 공고 제2026-2777호 2027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모집(2차)
- 여수시 공고 제2026-2778호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분관」 위탁 운영법인 모집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779호 조발항 등 어항 내 방치선박 제거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785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 8월분)
- 여수시 공고 제2026-2786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 8월분)
- 여수시 공고 제2026-2787호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개찰결과 공고(여수 안산동 2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 여수시 공고 제2026-2788호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여수시 안산동 1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 여수시 공고 제2026-2789호 돌산읍 신기항 내 방치선박 제거 공고

중부민원출장소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고시 제2026-33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774호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한 측량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7일

1. 고시대상

가. 지적기준점(신규): 지적도근점 48점
(묘도동, 화치동, 적량동 일원)

2. 고시내용

가.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나. 좌표계의 원점명
다. 좌표 및 표고
라. 경도와 위도
마.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3. 성과 보관 장소

가. 장소 :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나. 전화 : 061) 659-3328

붙임 지적기준점 고시조서 1부.

여 수 시 장 (인)

●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조서

연번	기준점	기준점	원점명	좌표계	평면직각중형선수치		경 위 도		표고(m)	소 재 지	표지	설치일	비고
	명 칭	번 호			X(m)	Y(m)	위도	경도			재질		
1	지적표근점	2759	중부	세계	254610.88	266282.79	34-53-07.1086	127-43-30.2374	10.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740	황동	2026. 8. 26.	신규
2	지적표근점	2760	중부	세계	254631.08	266690.55	34-53-07.6681	127-43-46.2999	5.3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1	표석	2026. 8. 26.	신규
3	지적표근점	2761	중부	세계	254642.59	266891.08	34-53-07.9941	127-43-54.1995	5.3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1	표석	2026. 8. 26.	신규
4	지적표근점	2762	중부	세계	254572.2	267064.07	34-53-05.89	127-44-00.9914	5.3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1	표석	2026. 8. 26.	신규
5	지적표근점	2763	중부	세계	254493.91	267238.33	34-53-03.0872	127-44-07.8305	5.3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1	표석	2026. 8. 26.	신규
6	지적표근점	2764	중부	세계	254351.07	267358.77	34-52-58.4237	127-44-12.5317	5.4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2	표석	2026. 8. 26.	신규
7	지적표근점	2765	중부	세계	254241.89	267496.01	34-52-54.8484	127-44-17.9039	5.4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6	표석	2026. 8. 26.	신규
8	지적표근점	2766	중부	세계	254130.33	267622.69	34-52-51.1980	127-44-22.8597	5.1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6	표석	2026. 8. 26.	신규
9	지적표근점	2767	중부	세계	254019.67	267748.39	34-52-47.5773	127-44-27.7768	5.2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6	표석	2026. 8. 26.	신규
10	지적표근점	2768	중부	세계	253904.58	267874.49	34-52-43.8125	127-44-32.7085	5.3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6	표석	2026. 8. 26.	신규
11	지적표근점	2769	중부	세계	253757.45	267767.12	34-52-39.0642	127-44-28.4381	5.3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6	표석	2026. 8. 26.	신규
12	지적표근점	2770	중부	세계	253635.12	267646.09	34-52-35.1239	127-44-23.6371	5.5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6	표석	2026. 8. 26.	신규
13	지적표근점	2771	중부	세계	253498.99	267540.92	34-52-30.7322	127-44-19.4568	5.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6	표석	2026. 8. 26.	신규
14	지적표근점	2772	중부	세계	253367.74	267418.42	34-52-26.5027	127-44-14.5957	5.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6	표석	2026. 8. 26.	신규
15	지적표근점	2773	중부	세계	253389.74	267223.77	34-52-27.2630	127-44-06.9380	5.0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6	표석	2026. 8. 26.	신규
16	지적표근점	2774	중부	세계	253391.44	267017.31	34-52-27.3671	127-43-58.8100	5.7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6	표석	2026. 8. 26.	신규
17	지적표근점	2775	중부	세계	253413.81	266817.57	34-52-28.1404	127-43-50.9522	5.1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6	표석	2026. 8. 26.	신규
18	지적표근점	2776	중부	세계	253414.28	266630.63	34-52-28.1998	127-43-43.5918	4.6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6	표석	2026. 8. 26.	신규
19	지적표근점	2777	중부	세계	253422.08	266498.91	34-52-28.4838	127-43-38.4080	4.89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5	표석	2026. 8. 26.	신규
20	지적표근점	2778	중부	세계	253460.42	266397.81	34-52-29.7516	127-43-34.4383	5.3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5	표석	2026. 8. 26.	신규
21	지적표근점	2779	중부	세계	253557.14	266353.02	34-52-32.9007	127-43-32.7027	5.5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5	표석	2026. 8. 26.	신규
22	지적표근점	2780	중부	세계	253663.02	266391.87	34-52-36.3270	127-43-34.2625	5.9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5	표석	2026. 8. 26.	신규
23	지적표근점	2781	중부	세계	253803.66	266507.98	34-52-40.8633	127-43-38.8743	5.4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5	표석	2026. 8. 26.	신규
24	지적표근점	2782	중부	세계	253954.67	266605.64	34-52-45.7402	127-43-42.7628	5.7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5	표석	2026. 8. 26.	신규
25	지적표근점	2783	중부	세계	254089.86	266717.84	34-52-50.1003	127-43-47.2192	5.0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5	표석	2026. 8. 26.	신규
26	지적표근점	2784	중부	세계	254237.18	266819.21	34-52-54.8564	127-43-51.2532	5.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1	표석	2026. 8. 26.	신규
27	지적표근점	2785	중부	세계	254327.32	266709.26	34-52-57.8072	127-43-46.9498	6.0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1	표석	2026. 8. 26.	신규
28	지적표근점	2786	중부	세계	254442.33	266603.68	34-53-01.5641	127-43-42.8252	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1	표석	2026. 8. 26.	신규
29	지적표근점	2787	중부	세계	254114.49	266932.86	34-52-50.8486	127-43-55.6930	5.6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1	표석	2026. 8. 26.	신규
30	지적표근점	2788	중부	세계	254011.32	267052.52	34-52-47.4726	127-44-00.3750	5.2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1	표석	2026. 8. 26.	신규
31	지적표근점	2789	중부	세계	253856.47	266916.99	34-52-42.4802	127-43-54.9939	5.3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5	표석	2026. 8. 26.	신규
32	지적표근점	2790	중부	세계	253702.82	266782.52	34-52-37.5262	127-43-49.6551	5.5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5	표석	2026. 8. 26.	신규
33	지적표근점	2791	중부	세계	253556.52	266654.91	34-52-32.8093	127-43-44.5887	5.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5	표석	2026. 8. 26.	신규
34	지적표근점	2792	중부	세계	253520.01	266638.81	34-52-31.6285	127-43-43.9441	5.5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6	표석	2026. 8. 26.	신규
35	지적표근점	2793	중부	세계	253564.75	266514.04	34-52-33.1098	127-43-39.0446	5.1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5	표석	2026. 8. 26.	신규
36	지적표근점	2794	중부	세계	254111.95	267140.59	34-52-50.7167	127-44-03.8716	5.5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1	표석	2026. 8. 26.	신규
37	지적표근점	2795	중부	세계	254244.61	267256.69	34-52-54.9935	127-44-08.4814	5.2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1	표석	2026. 8. 26.	신규
38	지적표근점	2796	중부	세계	254489.3	267450.27	34-53-02.8872	127-44-16.1748	5.8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1	표석	2026. 8. 26.	신규
39	지적표근점	2797	중부	세계	254647.88	267589	34-53-07.9996	127-44-21.6838	6.6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1	표석	2026. 8. 26.	신규
40	지적표근점	2798	중부	세계	254762.87	267707.94	34-53-11.7020	127-44-26.4008	7.4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2011	표석	2026. 8. 26.	신규
41	지적표근점	2799	중부	세계	245919.5	259842.79	34-48-26.5255	127-39-14.4117	5.7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진동 48-33번지 일원	황동	2026. 8. 20.	신규
42	지적표근점	2800	중부	세계	246003.56	259934.29	34-48-29.2236	127-39-18.0330	5.8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진동 48-33번지 일원	황동	2026. 8. 20.	신규
43	지적표근점	2801	중부	세계	246078.22	259867.26	34-48-31.6705	127-39-15.4149	5.7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진동 48-33번지 일원	황동	2026. 8. 20.	신규
44	지적표근점	2802	중부	세계	246148.8	259798.73	34-48-33.9754	127-39-12.7369	5.1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진동 48-33번지 일원	황동	2026. 8. 20.	신규
45	지적표근점	2803	중부	세계	246106.85	259747.04	34-48-32.6251	127-39-10.6925	5.3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진동 48-33번지 일원	황동	2026. 8. 20.	신규
46	지적표근점	2804	중부	세계	245932.65	259823.61	34-48-26.9563	127-39-13.6603	5.7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진동 48-33번지 일원	황동	2026. 8. 20.	신규
47	지적표근점	2805	중부	세계	250873.73	263938.29	34-51-06.3861	127-41-56.8900	4.4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적향동 467번지 일원	황동	2026. 8. 20.	신규
48	지적표근점	2806	중부	세계	250965.4	264002.93	34-51-09.3460	127-41-59.4596	4.4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적향동 467번지 일원	황동	2026. 8. 20.	신규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전남광주특별시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 863호선 여수 별가 공정지구 굴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결정 전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일

여수시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지방도 863호선 여수 별가 공정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 위치 :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산 59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선형개량 L=0.940km
- 사업시행자 : 전남광주특별시장(도로관리사업소)
- 사업기간 : 2026. ~ 2028.

2. 도로구역 (변경)결정사유

: 지역내 굴곡위험도로를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3. 공람 장소 및 기간

- 기간 : 2026. 9. 7. ~ 2026. 9. 21. (14일간)
- 장소 : 여수시청 도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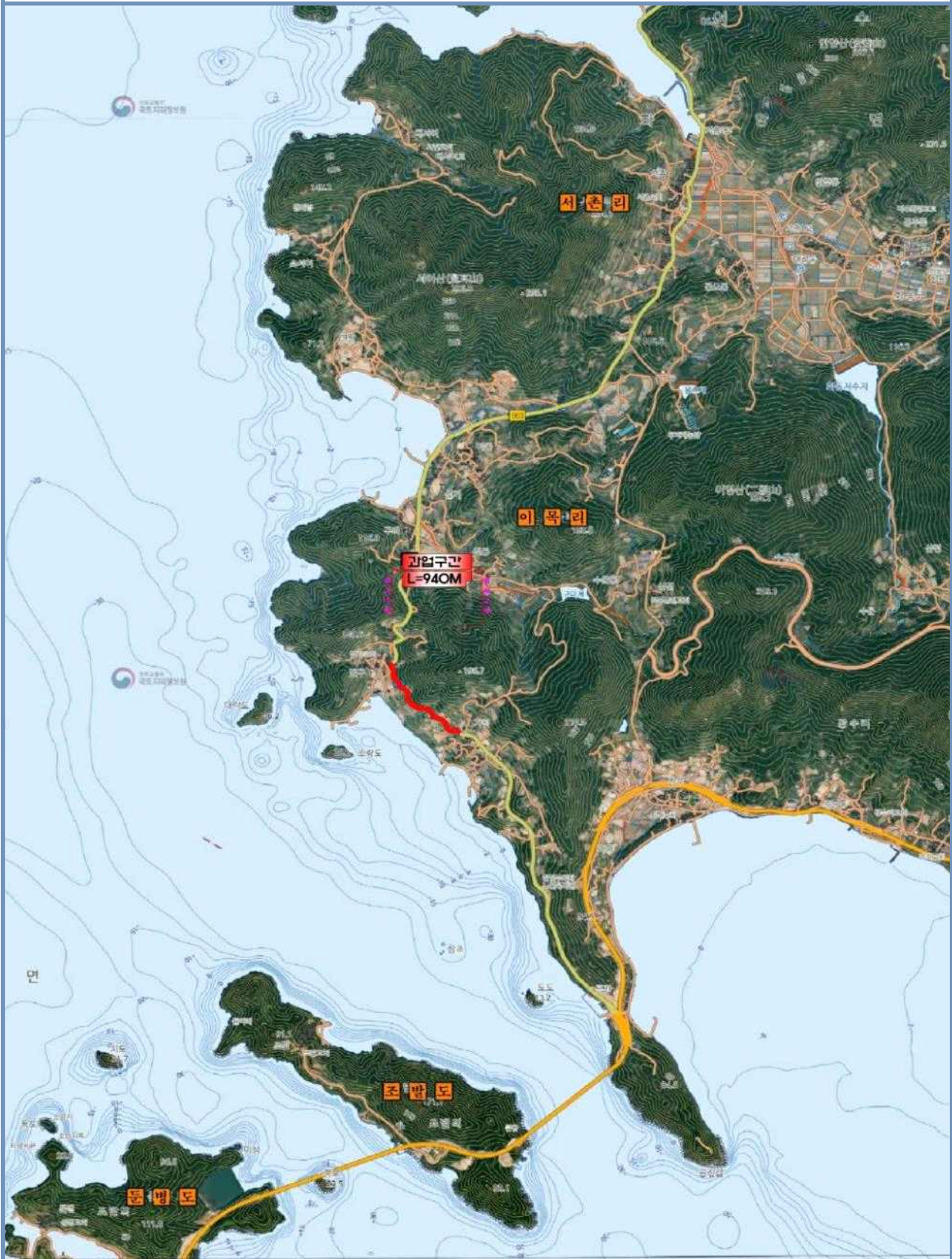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열람 기간내
-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 (061-659-4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위치: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산 591번지 일원 (지방도 863호선)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산591	임	465	465	미등기 사정토지		박*효	화양면 이목리****	토지 대장상 소유자
2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765	도	304	127	국토교통부	국			
3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산 591-1	임	1122	1,122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국			
4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606-1	임	210	210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국			
5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607-1	도	41	41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국			
6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766	구	271	37	국토교통부	국			
7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607-2	전	135	135	여주시	국			
8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608-2	전	625	625	여주시	국			
9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608-1	도	189	138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국			
10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767	도	383	109	국토교통부	국			
11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산592	임	2429	17	밀양박씨규정 공파여수문중회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			
12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612-1	도	15	15	박*남	화양면 이목리1**4			
13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641-1	도	392	392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국			
14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641-2	전	339	339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국			
15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산 595-1	임	354	354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국			
16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640-3	전	99	99	박*만	익산시 인북로334, ***동****호			
						채*동	여주시 여천체육공원 길 52, ***동 ***호			
17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641-3	전	99	30	박*만	익산시 인북로334, ***동****호			
						채*동	여주시 여천체육공원 길 52, ***동 ***호			
18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640	전	486	316	박*희	순천시 조례동68-19 연동2차대주파크빌 ***동***호			
19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640-2	도	37	37	여주시	국			
20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633-4	도	495	187	박*식	여주시 화양면 빨기미 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천남지점)	근저 당권
21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640-1	도	409	409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박*태	여주시 화양면 연말길 **			
22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산 604-5	도	1220	1,220	여주시	국			
23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774	도	760	760	국토교통부	국			
24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산606	임	9986	1,286	박*형	순천시 조례동560금호 아파트***-***			
25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산 606-1	도	526	526	박*형	여주시 화양면 가정길 **			
26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산607	임	198	22	박*식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			
27	여주시 화양면 이목리	1619-1	도	49	49	강*곤	여주시 신월로882, 나 동***호(**맨션)	최수영 새마을금고	여주시 버드나무길5-1	근저 당권
								강*례	여주시 흥국로13, *층동(학동)	채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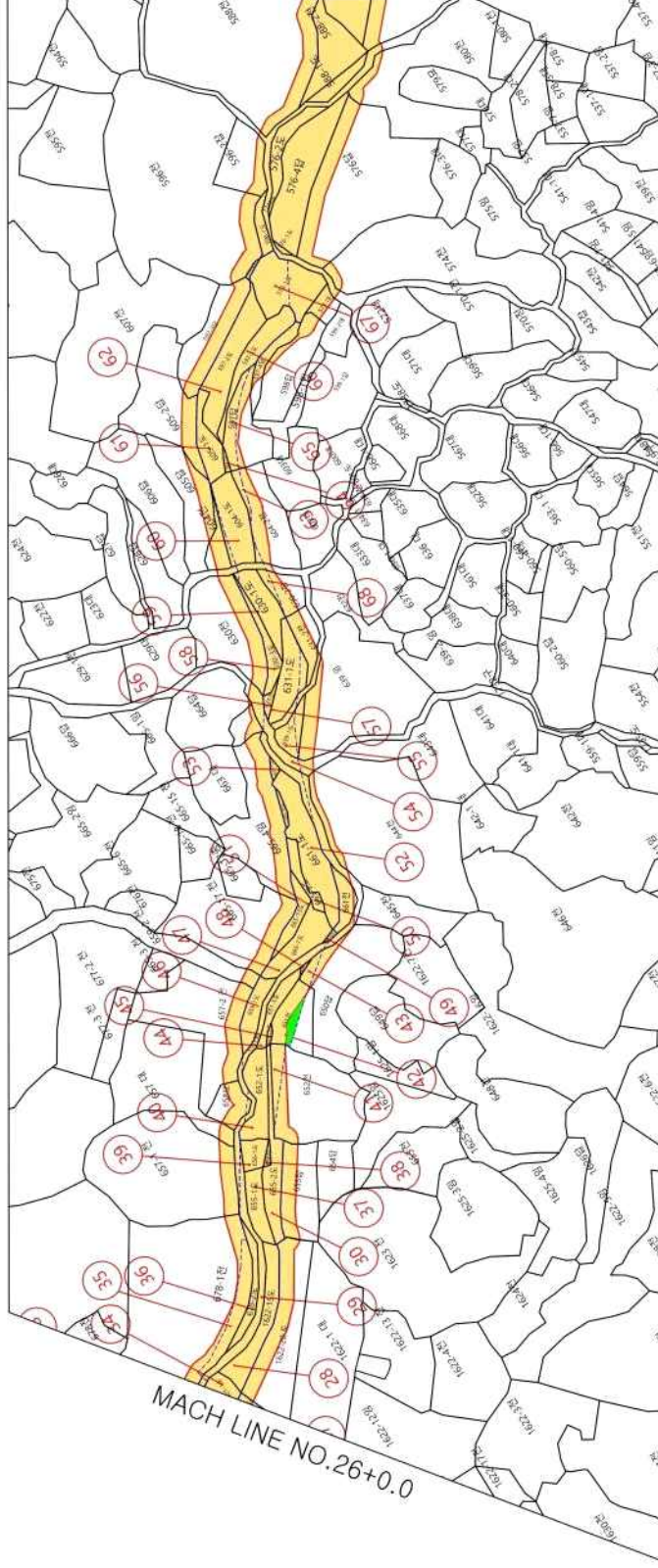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대 장 면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28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1622-15	도	262	262	국토교통부	국			
29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1731	도	559	315	국토교통부	국			
30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55-2	도	237	237	여수시	국			
31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산608	임	397	12	강*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24/1)			
32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1620-1	도	43	43	김*지	화양면 이목리****			
33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1775	구	1131	62	국토교통부	국			
34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1621-1	도	88	88	나*집	화양면 이목리***			
35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78-1	전	2052	184	장*준	화양면 이목리***			
36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78-2	도	113	113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37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55-1	도	148	148	박*순	화양면 이목리****			
38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56	답	13	13	미등기 사정토지		박*석		토지 대장상 소유자
39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56-1	도	83	83	미등기 사정토지		박*석		
40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52-1	도	220	220	장*주	화양면 이목리***			
41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52	전	849	80	조*복	화양면 이목리***			
42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51	전	270	155	장*남	화양면 이목리***			
43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50	답	815	36	정*금	여수시 화양면 가정 길*~*			
44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51-1	도	106	106	박*기	화양면 이목리***			
45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51-2	도	11	11	박*기	화양면 이목리***			
46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59-1	도	128	128	장*식	화양면 이목리***			
47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55-7	도	217	217	강*련	화양면 이목리****			
48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50-1	도	5	5	박*영	화양면 이목리****			
49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55-8	임	6	6	강*훈	여수시 신기북/길 20,***동***호			
50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55-9	도	74	74	박*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 수로110,바동***(만수 동,**아파트)			
51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55-13	도	93	93	여수시				
52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61-1	도	402	402	미등기 사정토지		장*근		토지 대장상 소유지
53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55-11	도	12	12	박*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 수로110,바동***(만수 동,**아파트)			
54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1732	구	995	63	국토교통부	국			
55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39-1	도	110	70	강*철	여수시 문수동*~*	제일호*** 홀딩스자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 길 21,***호(역삼동)	가압류
56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31	전	27	27	김*대	화양면 이목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자 이외 위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57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31-1	도	245	203	김*대	화양면 이목리***			
58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30-3	도	105	102	미등기 사정토지		장*근	화양면 이목리***	토지 대장상 소유자
59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30-1	도	196	193	미등기 사정토지		장*근	화양면 이목리***	
60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04-1	도	276	266	박*묵	화양면 이목리***			
61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05-1	도	153	153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62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597-2	도	361	361	박*수	여수시 신월로*** (국동)			
						박*덕	여수시 국동남6길 **-*(국동)			
						유*례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 좌로 ***번길 *, ***호 (양동, **파크맨션)			
						박*량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 릉로**가길**, ***동			
						박*정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 좌로 ***번길 *, ***호 (양동, **파크맨션)			
						박*숙	담양군 수북면 수북문 화길 **			
						박*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 변로*길 **, ***호(녹변 동, **렉스빌)			
						박*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 악로**길 **, ***동*** 호(봉천동, **푸르지오 아파트)			
						오*은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 ***동***호(중흥 **클래스)			
						박*형	여수시 화양면 가정길 *-*			
63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04-2	전	438	41	박*형	순천시 조례동***금호 아파트***-***			
64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597-1	도	12	12	박*수	여수시 신월로*** (국동)			
						박*덕	여수시 국동남6길 **-*(국동)			
						유*례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 좌로 ***번길 *, ***호 (양동, **파크맨션)			
						박*량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 릉로**가길**, ***동			
						박*정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 좌로 ***번길 *, ***호 (양동, **파크맨션)			
						박*숙	담양군 수북면 수북문 화길 **			
						박*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 변로*길 **, ***호(녹변 동, **렉스빌)			
						박*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 악로**길 **, ***동*** 호(봉천동, **푸르지오 아파트)			
						오*은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 ***동***호(중흥 **클래스)			
						박*형	여수시 화양면 가정길 *-*			
65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597	답	333	111	박*형	여수시 화양면 가정길 *-*			
66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597-5	도	206	206	여수시	국			
67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573-1	도	400	218	장*진	화양면 이목리***			
68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630-2	전	147	28	나*일	여수시 화양면 가정길 **			
69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1773	도	265	88	국토교통부	국			
소 계				34,251	14,314					

지방도863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지형고지도면

용 지 도 (2)

S = 1 : 1,800



	변경도로구역
	용지경계선
	기존도로구역

공 사 명	사 용 용도	용 지 의 사	도 면 적	축 척	출 제 일 자	검 증 인	장 보 인	주 장 인	도 의 인
지방도면제정 여수형기공정지구공해예방도로 개선사업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유) 정 강	용 지 도 (2)	1 : 800	2023.	김 종 복	장 보 용	주 장 인	도 의 인

지방도863호선 구례 【지방도 863호선 여수 벌가 공정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주민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지방도 863호선 여수 벌가 공정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사업장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산591일원	
의견 제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지방도863호선 구례 【지방도 863호선 여수 벌가 공정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주민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지방도 863호선 여수 벌가 공정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사업장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산591일원	
의견 제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상호 및 대표자 : (주) 에플랜트 김경훈
-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암9길 15
- 3. 법인(개인) 등록번호 : 206211-0068053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가스.난방공사업	여수-26-하-06	난방공사 제1종	2026. 9. 4.

2026 년 9 월 4 일

여 수 시 장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 건호이엔씨(주) 박정현
- 영 업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마산로 148-70
- 법인(개인) 등록번호 : 206211-0063467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가스.난방공사업	여수-26-하-07	난방공사 제1종	2026. 9. 4.

2026 년 9 월 4 일

여 수 시 장

2027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고용주 모집 공고(2차)

2027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고용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2차)합니다.

2026년 9월 7일

여 수 시 장

1 프로그램 개요

가. 운영지침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나. 목 적 :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

다. 기 간 : 2027. 1. ~ 12.(1년)

※ 작년과 달라진 점: (당초)상·하반기 고용주 모집 → (변경)1년치 고용주 모집
라. 비자종류 : 업무협약(MOU)체결 해외지자체 주민 계절근로(E-8-3)

※ MOU체결 대상국 : 필리핀 우바이시

마. 선발방법 : 기초체력검정 및 면접을 통해 현지 직접 선발

바. 고용분야 : 해조류양식, 멸치건조, 굴 양식(선별·세척·까기·포장·
해상채취), 전복종자생산, 멍게류양식

사. 고용기간 : 기본 5개월(최대 8개월)

아. 최대고용 : 어가당 11명(기본 9명 +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2명)

자. 지원내용 : 근로자 선별, 비자발급인정신청 등 행정사항 및 입·출국 지원
차. 추진절차

① 고용주 모집(8월) → ② 숙소 점검 및 선정(9월 초) → ③ 유치신청(9월 중)
→ ④ 인원배정(10월 초) → ⑤ 근로자 선발 → ⑥ 입국 및 근로(27년 1~12월)

2

신청자격(고용주 요건)

가. 신청대상 : 어가 및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 어업회사법인)

나. 생산규모에 따라 인원 허용인원 배정 *어가 또는 어업법인 허용인원은 같음

다. 고용주 배정 제한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시 1년간 배정 제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및 금고형 이상 시 3년간 배정 제한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법무부 또는 지자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허위초청, 불법 알선, 불법 고용, 성매매·성폭력범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3)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 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 조치** 위반, 그 밖에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정부·지자체 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배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산재(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미가입, 임금·수당 체불, 폭언·폭행, 성추행·성폭력 등

**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등

4) 기초지자체에서는 사업장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험, 숙소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감안하여 동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사업장별 허용 인원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제한 할 수 있음

5) 당초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고용주를 신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인수를 거부하거나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소 및 향후 3년간 배정 제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여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방적 인수거부 어가 조치 및 근로자 보호 재배치 방침』

다. 업종별 허용 인원과 세부 기준

허용 수산물		적용 업종
① 해 조 류	육상 가공·생산	㉠ 김 건조, ㉡ 기타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해 조 류 ㉣ 해 조 류 종 자
② 어 패 류	육상 가공·생산	㉦ 멸치 건조 ㉧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참조기 그물 털기·선별·포장 ㉨ 명태 가공 ㉩ 굴 선별·세척·까기·포장 ㉪ 전복종자생산 ㉫ 양미리 그물 털기·선별 ㉬ 새조개 가공(시범) ㉭ 새우 건조(시범)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가리비 해상 채취·포장(시범) ㉯ 굴 해상 채취(시범)_여수시
③ 피 낭 류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멍게류 ㉱ 멍게류 종 자

※ 어선원(E-9, E-10)이 어선에 승선하는 연근해어업은 계절근로 허용업종에서 제외

※ 허용인원 : 어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수산물 생산 규모 확인

허용수산물 \ 생산규모	생 산 규 모(단위 : 속, 톤, 박스)				
①㉠ 해 조 류(마른김)	30만속 미만	30~50만속 미만	50~60만속 미만	60~70만속미만	70만속이상
①㉡ 해 조 류(기타)	5천톤 미만	5~8천톤 미만	8천~1만톤 미만	1~1.2만톤미만	1.2만톤이상
①㉢㉣ 해 조 류(양식)	5명 이하				
②㉦㉧ 어 패 류(멸치 등 건조)	8만박스 미만	8~12만박스 미만	12~16만박스 미만	16~20만박스미만	20만이상
②㉨㉩㉪㉫ 어 패 류(기타)	12톤 미만	12~20톤 미만	20~30톤 미만	30~40톤미만	40톤이상
②㉬ 어 패 류(전복종자)	250만 마리 (파판 50만장)	300만 마리 (파판 60만장)	350만 마리 (파판 70만장)	400만 마리 (파판 80만장)	450만 마리 (파판 90만장)
②㉮㉯ 어 패 류(양식)	(시범운영) 어가별 3명 이하				
③㉰㉱ 피 낭 류(양식)	어가별 2명 이하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복수의 수산물 양식·가공 시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수산물의 허용 인원 적용

*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판단 하에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매출액), 생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세 어가 등의 허용 인원 조정 가능

3

고용주 준수사항

가.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58조의2에 따른 기숙사 관련 규정 준수

- 계절근로자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주거환경 제공
- 계절근로자가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미적용(면제)

1)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창고 개조 숙소 등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 컨테이너·창고의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조립식 구조로써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에는 숙소로 사용 가능

나) 숙소 설치금지 장소

- 소음, 악취, 진동이 심한 장소
- 산사태,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2) 필수 시설·물품 구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구조·설비 필수

가) 침실(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 8인 이하),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나)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채광·환기시설(창문 등)

다)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라) 취사도구, 침구류

마) 소화기,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

3)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여수시 기준 월 300,000원) *숙소 150,000원, 식사 150,000원

가)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숙식비 징수 상한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숙소시설표 제공하며 각각 서명·보관

○ 숙소 시설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준(실제 입차료 등)의 금액을
징수하되, 다인실의 경우 공동사용을 고려하여 1인당 적정 금액 징수

※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금액을 명시한 경우 징수하되, 초과 징수 금지

* (예시) 1실(전용 6㎡) 1인 거주 = 30만 원

1실(전용 10㎡) 2인 거주 = 40만 원 ÷ 2인 = 20만 원 등

▶ 다인실의 경우 1인당 사용 면적을 고려하여 1인당 부담액이 낮아지도록 할 것

나)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숙식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사전 공제 후 임금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숙식비 공제금액(부담액) 등을 명시하여 근로
자에게 설명하고 ‘숙식비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여 각자 보관(근로계
약서상 숙식 정보와 공제금액이 달라 발생하는 분쟁 대비)

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최소 임금 보장

1) 근로개시 전 또는 근로계약 내용 변경 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 구인 시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연도별 최저
임금 변동 시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 근로계약기간,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5인 이상),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

○ 입국 즉시 예정된 체류지로 이동하여 휴식 부여, 지자체는 교육, 마약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근로계약서 서명·교부 확인 후
근로 개시(숙식은 입국 즉시 고용주가 제공, 임금은 근로개시일부터 산정)

나) 근로계약서는 상호 서명하여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자 보관

2) 총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월 153시간) 이상의 임금 최소보장

☞ 주40시간(월 174시간) 이상의 근로계약 권고(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어번기, 혹서
기 등의 월별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기상 영향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등 최소임금으로 월 153시간 이상 보장해야 함)

-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휴가기간, 중도 퇴직 등)

다. 임금지급

1) 연도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지급하고
근로시간 등 임금산출 내역을 기재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함

가) 월 실제 총 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 ※ 총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월153시간) 이상 최소임금 보장, 월 174시간 이상 지급 권고

2) 지자체는 매년 최저임금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급, 일급, 월급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함

가) 계약기간 중 연도가 달라지면 새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해상작업 20% 가산)

☞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3)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 지급 시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통장 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을 허용하되,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수령증’을 별도로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 ※ 근로자와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공제 후 임금 지급

- ※ 임금수령증은 2부 작성하여 고용주 및 근로자 서명 후 각자 보관

- ※ 임금 중 일부를 제3자(가족, 중개인 등)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지자체 담당자는 계절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제3자
임금gal취 여부 포함) 정기적으로 면담 실시, 출국 전 정산여부 확인

-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6.2.15. 시행)」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근로자가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
근무하는 계절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은 가능

※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체 등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 가산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가공업체 등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름

라.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 기준

- 1) (근로시간)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 1일 최대 10시간(휴게시간 제외) 이상 근로 금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가) 연장·휴일 근로 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되,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권고

나)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근로 시 시간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권고(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 필수)

- 2)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작업시에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 부여

- 3) (휴일)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필수 준수사항

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 시 100분의 50, 8시간 이상 근로 시 2배 이상을 가산(권고)하는 등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 휴일 근로시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1회 또는 월4회 이상의 휴일은 보장해야 함

나) 공공형 등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근로기준법 제60~62조 참고)

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노동절(5.1.)은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농·어업)은 노동절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근로 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연장·휴일근로 50~100% 가산 지급 대상은 아님)

※ (5인 이상 농어업사업장) 소정 근로시간이 일 8시간인 근로자가 5.1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수당(8시간)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8시간 근로시 총 16시간의 임금 지급

마.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1)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어가 및 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근무처 변경 시 출입국관서에서 사전허가 필요)

※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또는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출력물,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에 명시된 사업장(선적항 위판장),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 법인에서 수산물의 양식,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1차 가공 등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 가능

2) 어업의 경우 원시가공에 한하여 근무 가능(허용 해상작업 외 금지)

3) 지게차 운전 행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하·유통판매 등 작업 금지

○ (예외) 근로자가 국제·국내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고용주가 자동차손해보험 가입, 음주운전 예방 안전 교육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운전 허용

※ 농작업 관련 근로자의 무면허·음주운전 등 적발 시, 고용주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관리감독 소홀로 고용주에 대한 벌점 부과 가능(외국인근로자도 법 위반시 제재)

바. 산재보험 등 보험 의무 가입

- 1) 고용주와 계절근로자는 산재 및 질병·상해·사고, 임금체불 등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며, 고용주는 계절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지원해야 함

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상 의무보험(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 ‘26. 2.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절근로자에 대해 적용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의무보험 주요 내용 >

구분			가입·신고 기한	보장내용	보험료 부담	비고
고용주 가입 (① 또는 ②에 반드시 가입)	①	산재보험	근로 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 중 사망·상해·질병, 미지급 임금 (1인당 최대 400만원)	고용주 전액 부담	1인 이상 모든 (법인)사업장 - 1인 이상 농어업 법인, 공공형, 5인 이상 농어가는 의무가입 대상임
	②	농·어업인 안전보험	(재입국자)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근로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규 입국자)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로 중 사망·상해·질병	고용주 전액 부담	5인 미만 농어가만 산재보험 대신 가입 가능 (2개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함)
		임금체불 보증보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근로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지급 임금 (1인당 최대 400만원)	고용주 전액 부담	
근로자 가입 (③)	③	상해보험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일상생활 중 사망·상해·질병	근로자 전액 부담*	모든 계절근로자

※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상해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공제방법 등을 사전 합의하고 보험료 공제 동의서 필수 작성교부해야 함)

나) 산재보험 의무가입(5인 이상 사업장 및 법인사업장)

- ① 최초 가입은 가입 주체인 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가입 신청
※ 방문·팩스·온라인(<https://total.kcomwel.or.kr>)
- ②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신고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고용주는 보험 실효 여부 확인 후 다음달 15일
까지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계절근로자를 최초 고용할 경우
근로개시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① 사업장 산재보험 신청, ② 계절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병행 처리

※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고용하는 경우 포함, 계절근로자 5인 이상 고
용한 경우 산재보험에 우선 가입, 법인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보험 관계 성립

-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자는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상 가능

- 보험 관계는 고용한 마지막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제출서류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근로자명부

○ 근로자의 고용 신고

- 입·퇴사 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한 날 또는 고용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보험 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각 법률에 따라 가입

※ 법인사업장(공공형, 농·어업법인) 등은 직장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

< 농어업고용인력법 상 의무보험 시행 관련 '26년 한시 조치사항 >

1. 제도기간 운영 : '26. 2. 15. ~ '27. 2. 1.4 (해당기간 벌금 부과 면제)

2. 외국인 등록·체류기간 연장 등 제출서류 확인 조치사항('26년말까지만 적용)

1) 산재보험은 기존 지침대로 적용

2) 농어업인안전보험가입: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가입확약서 제출

3) 임금체불보증보험 :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확약서 제출

※ 가입확약서 제출시 추후 지자체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현황 일괄 공문 제출

4) 상해보험 : '26. 2.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다만 2. 15.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 가), 나)에 따름

- * '26. 2. 15.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해 국내 상해보험에 가입(연장)하고 가입증명서 제출
- 가) 본국에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인정
- 나) 본국이나 국내에서 여행자보험과 상해보험 중 어느 것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가입확약서나 보험가입증서 제출 시 외국인 등록 처리(가입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현황 일괄 공문 제출)
- 다) '26. 2.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근무처 변경 등)에도 여행자보험으로 전체 체류기간에 대해 질병·상해·사망 등 보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 한시 인정
- ※ 근로계약 연장 등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로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함

사. 인권보호 및 산업안전 기준 준수

- 1)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현금카드)을 고용주, 가족 또는 제3자가 대신 보관할 수 없음(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및 제94조제19호에 따라 처벌 대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협박,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과도한 숙식비 징수 등 인권 침해 금지
- 3) 고용주는 산업 안전·보건조치 등 근로자 안전에 관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산재사고 발생 시 산재 처리 등 근로자 적극 보호

* 산업 안전조치, 각종 기상·재해(한파·폭염 등)로 인한 근로 중 사고에 대비한 작업중단,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9. 7.(월) ~ 2026. 9. 18.(금) / 12일간

나. 접 수 처

- 1) (전 업종)여수시청 수산경영과(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 2) (굴 가공)굴수하식수협 여수지소(여수시 충무로 35)

다. 구비서류

- ①신청서(붙임1), ②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③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약약서(붙임2), ④임금채불보증보험 가입 약약서(붙임3), ⑤숙소시설표(붙임4), ⑥임금지급내역 또는 근로대장(기존 계절근로프로그램 참여 고용주 한함), ⑦사업자등록증(사본), ⑧신분증(사본)

라. 재고용 신청시 유의사항

- 1)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서 지자체는 당해연도 9월부터 법무부에 인원배정을 신청함.
- 2) 당해연도 근로자 재고용 신청은 금년 12월중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자를 별도로 수요조사 할 예정임.

※ 단, 날짜와 관계없이 재고용 신청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 작성 무관

5 유의사항 및 문의

가. 본 프로그램 신청 후 고용주 준수사항*을 갖추지 못한 고용주는 제외됩니다.

- *①적정 주거 환경 제공 ②임금 및 근로조건 준수 ③인권 보호 및 안전 관리
④이탈 방지 및 신고 의무 ⑤ 신청 제외 대상(결격사유)

나. 법무부에서 여수시 총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신청한 인원만큼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수산경영과 수산유통팀(☎ 061-659-391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7년 여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자 현황	성명(업체명)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필수기입)	전화번호
	주소	

구인 사항	사업장 주소(주 작업장)																								
	계절근로자 숙소(예정지 포함) 주소																								
	사업내용(주요 품목):	직무내용																							
	생산규모: 톤 (전년도 기준)																								
	필요인원 : 명 ※ 기타 필요사항 기재	희망 도입 방식																							
	※	[√] MOU, [] 결혼이민자 가족 등 초청 [] 국내체류외국인, [] 도입방식 무관																							
	근로자 모집 구분(희망 인원)	희망 연령: 만 세 ~ 만 세																							
	신규: 명 , 재고용: 명																								
희망 국적 :	계절근로자 고용 예정 기간 : 총 5개월																								
1순위() 2순위()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별 계절근로자 소요 인력(명)																									
<table><tr><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뒤쪽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 재고용 신청내역’, ‘월별 계절근로자 신청 현황’ 추가 작성

※ 아래 제출서류 외에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 서류 (예시)	1.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약약서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약약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합니다) 3. 숙소시설표(붙임) 4. 임금지급내역, 근로대장 등 증빙서류(기존에 계절근로프로그램 참여 고용주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	---

위와 같이2027년 여수시의 계절근로자 고용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부적합 숙소 제공, 임금체불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인 조건 >

※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표기되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기 바랍니다.

근로 조건	① 근로시간		- 소정근로요일: 요일 ~ 요일 - 소정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월 ()시간 ※ 농번기·성어기, 농한기·어한기, 계절·기상 요인에 따라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② 휴게시간		1일 ()회, ()시간 ()분 ※ 기상상황 등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③ 휴일		[] 주 1회, [] 월 4회 [] 그 밖의 경우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④ 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	임금: 2,236,300원([√]월급, []시간급, []일급, []주급)
			상여금 및 수당	[√]지급(상여금: 원/(월), 수당: 16,050원/(시간), []미지급 ※ (필수기재)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16,050)원을 지급합니다.
			임금지급일	() 부터 () 까지* 계산하여 [] 그 달 / [] 그 다음 달 ()일 또는 [] 그 주 / [] 그 다음 주 ()요일에 지급 ※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
⑤ 숙식 제공	숙박	[] 제공	숙박시설 []주택, []숙박시설(여관, 호텔, 펜션 등), 유형 []사업장 건물, []조립식 숙소, []그 밖의 숙박시설 숙박비용 [√] 근로자 부담(매월 150,000원), [] 미부담	
		식사	[√] 제공	[√]조식, [√]중식, []석식 : 근로자 부담(매월 150,000원) [] 식사비용 근로자 미부담(고용주가 무상 제공)
	[] 미제공			
⑥ 기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재고용 신청 내역 >

고용주 사실관계 기재란 (필수 기재)	• []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내역이 없으며 근로조건을 준수하였음 • []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무보험을 모두 가입하였음 • [] 계절근로자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하였음 • [] 계절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
	※ 위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함(동의 [] 비동의[])

재고용 신청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우선 순위	성명	국적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총 근로계약 일수	실제 근로일수	근로계약의 75% 총족 여부
					일	일	○ / X

※ 참고사항(필요시 기재)

월별 계절근로자 신청내역

입국월	인원			재입국자	비고
	계	남	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신청시 일정 변경이 불가함으로 신중히 신청바람.

신청인 :

[인/서명]

【붙임2】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협약서

1. 계절근로자 고용주

성명(업체명)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명만 기입	주민등록번호,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2. 협약내용

위 신청인은 계절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계절근로자가 신규입국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하며, 해당 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을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이 협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3】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약약서

1. 계절근로자 고용주

성명(업체명)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명만 기입	주민등록번호,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2. 약약내용

위 신청인은 계절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며, 해당 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을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약약합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이 약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4】

숙소 시설표 Residence/Accommodation Facility Information	
근무(예정)처 현황 【Workplace (expected) Information】	
사업장명 (Name of Workplace)	소재지 (Address)
대표자 (President)	전화번호 (Telephone No.)
시설 현황 【Facility Information】	
주거시설 유형 Type of Residential Facility	☐ 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주택 등) House (detached house, townhouse, apartment, etc.) ☐ 고시원 Gosiwon(a kind of single room occupancy class of building) ☐ 오피스텔 Officetel(ex: a one-room apartment)
	☐ 숙박시설 Accommodation
	☐ 가설 건축물 (종류:) Temporary Building (Type:)
	☐ 기타 () Others () ☐ 주거시설 내 혼숙 인원 : 명 Number of male and female workers sharing a room inside the residential facility: persons
내부시설 Internal Facilities	침실 Bedroom ☐ 남녀구분 Men and women separated ☐ 남녀미구분 Men and women Not separated ☐ 1인당 침실 크기 Bedroom size per person: (침실 1개 당 인원 : 명)(Persons per bedroom: persons) ☐ 잠금장치 유 Locking system Installed ☐ 잠금장치 무 Locking system Not Installed
	화장실 등 Bathroom, etc. ☐ 숙소 내부 Inside the Accommodation ☐ 숙소 외부 Outside the Accommodation ☐ 잠금장치 유 Locking system Installed ☐ 잠금장치 무 Locking system Not Installed ☐ 수세식 Flush toilet ☐ 재래식 Pit latrine toilet ☐ 입식세면대 Standing washbasin ☐ 샤워시설 Shower facility ☐ 욕조 Bathtub ☐ 온수 사용 가능 Hot water available ☐ 온수 사용 불가 Hot water Not available
냉·난방시설 Cooling·Heating Facilities ☐ 있음 Installed ☐ 없음 Not Installed ☐ (냉방) 종류: (Cooling) Type ☐ (난방) 종류: (Heating) Type	
채광 및 환기시설 Lighting and Ventilation Facilities ☐ 있음 (종류:) Installed (Type:) ☐ 없음 Not Installed	
소방시설 Firefighting Facilities ☐ 설치 Installed ☐ 미설치 Not Installed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분관」 위탁 운영법인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 제4조(수탁자의 공개모집 등),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공개모집) 규정에 따라 아래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9. 7.

여 수 시 장

1.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 탁 기 간	비고
		대지면적	건물		
동여수노인복지관	국동5길 7(국동)	3,244㎡	1,708.9㎡	'26.11.14.~'31.11.13.	
동여수노인복지관분관	동문로 99(공화동)	1,408㎡	617.88㎡	'26.11.14.~'26.12.31.	

2. 위탁대상 사무

- 가.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전반
- 나.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에 명시된 노인복지관 운영사업
- 다. 「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신청자격

- 가.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정관 및 등기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내용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나.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 보조금 지원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자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다. 수탁법인은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및 협약서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4. 신청 자격 제한

- 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는 법인
- 나. 법인의 주된 사무실이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다. 법인대표, 임원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시설의 장)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 라.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운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 마.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인

※ 수탁자 선정 이후 해당사항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7.(월) ~ 2026. 9. 22.(화) 【15일】

나. 접수기간 : 2026. 9. 28.(월) ~ 2026. 9. 30.(수) 【3일】

※ 신청서식 여수시청 누리집(<https://www.yeosu.go.kr>)에서 다운로드

※ 접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함.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여수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1-659-3726)

6. 제출서류(여수시청 누리집에 게재)

가. 위탁운영 신청서 1부.

나. 각서 1부.

다.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이사회결의서 사본 첨부) 1부.

라. 수탁운영(시설장 내정자 선정 포함)을 의결한 이사회 의결서 및 회의록 각 1부.

마. 법인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바.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

사.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증빙 서류 1부.

- 소정양식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작성

아. 운영계획서(운영 및 종사자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포함 등) 1부.

자. 기타 수탁자 선정 참고서류 1부.

- ※ 제출서류는 여수시청 누리집(고시공고)를 확인하여 A4규격 양면으로 작성·제본하여 가~자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12부(원본1+사본11부) 제출(우측면 목차에 따라 색인이 되도록 견출지 부착)
- ※ 목차 작성 및 각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 기재
- ※ 요약본 자료 파일 포함 제출
-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발표 PPT자료는 심사일 3일 전 별도 제출(제출서류 내용과 일치하여 제출)

7.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서류 및 면접 심사 결정
- 나. 1개 법인이 신청하였을 경우 7일 이상 재공고(2개 이상의 법인이 신청 시, 심사 추진)
 - 재공고 이후 단독 신청 시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심의를 실시
- 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 구성인원 : 9명 이내(공무원, 사회복지전문가 등)
 - (2) 심사항목 :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 협력관계 등
 -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26. 10월 중 여수시청 내 동백실에서 개최 예정(구체적 일시, 장소는 별도 통보)
 - ※ 신청서류 중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
- 라. 심의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법인 중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이 협약대상 1순위이며,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
 - 심의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재공고
- 마. 동점 시 ①법인의 적격성 ②시설장 및 종사자 ③사업계획의 전문성 ④재정 순으로 결정
- 바. 수탁 신청법인에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내정자에 한함)하여 사업계획을 프리젠테이션(PPT)자료로 설명(불참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
- 사. 선정발표 : 개별통보(1순위자에 한해 개별통보)
- 아. 협약체결 :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자는 여수시에서 정한 기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법인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를 수탁법인으로 선정하고 협약 체결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추가 제출 및 변경불가함.
-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일정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 다. 평가결과 및 심의자료는 비공개로 하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라. 선정된 수탁법인은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 마.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후에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법규 및 여수시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한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탁 운영법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노인장애인과(☎061-659-37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위탁운영신청서

법인명			대표자		
주 소	예)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전화번호		
법인설립 년 월 일			법인인가 번 호		
운영현황	사업장명	시설장	소재지	설치년도	
여수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분관」에 대하여 수탁법인으로 선정 되고자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법인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각서 1부 2.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1부 3. 위탁 운영신청 제출자료 일체					

각 서

○ 법 인 명 :

○ 주 소 :

○ 성명(대표자) :

상기 법인은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분관」 수탁법인 공모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탁 운영법인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여수시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작성인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_____ 은(는)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분관」 수탁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시설운영비에 대해 법인에서 부담 및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법인 자부담 지원 방법

(단위 : 백만원)

년도별	경비부담자 (법인)	부 담 액	부담방법	비 고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26. . .

법인명칭(단체, 개인) :

주소 :

대표 : (인)

여 수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1부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증빙자료(자율서식)

I 수탁자의 적격성

○ 법인 유형, 목적사업 등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합성을 평가

1. 수탁운영 신청 법인 현황

가. 신청 배경과 목적

1) 배 경 :

2) 목 적 :

나. 기본 현황

법 인 명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자			법인유형	
설립허가일 및 등기일	허가일		법인의 종류	☐ 시설법인 ☐ 지원법인 ☐ 기타법인 ※ 해당란에 ☒ 표시
	등기일			
설립근거 및 목적				
주요연혁				
주된사업				
기타사항				

다. 대표자 및 임원 현황

기본인적사항						임 기 (최초임명일)	소지자격 (사회복지 관련)	특수관계 여 부 (친인척등)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본 적 (호주)	직 위 (직책)	주요경력				

라. 법인 직원 현황 ※ 정규직, 계약직(2022년부터~현재까지)

부서명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근무기간	담당업무	사회복지 자 격 증

첨부서류	법인 직원대장, 업무분장표
------	----------------

마. 최근 5년간 법인 이사회 활동 ※ 이사회 개최횟수(2022년부터~현재까지)

년도	개최일	참석인원	참여율	상정안건	사업계획 반영여부	비고

첨부서류	①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 사업자등록증 1부 ③ 법인 설립허가증 1부 ④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⑤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분관 위탁 신청(시설장 내정자 포함)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⑥ 이사회 관련 규정 등 이사회 구성 관련 서류 ⑦ 운영규정 및 기타 관련 서류
------	--

바. 자체 회계감사 현황

법인명	감사일	구 분 (정기·수시)	감사자	지적내용	개선내용	비고

첨부서류	감사관련 근거서류
------	-----------

사. 최근 5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법인명	점검일자	구 분 (정기·수시)	감사기관	지적내용	처분결과	비고

첨부서류	지도감독 실시관련 공문 및 근거서류
------	---------------------

2. 법인재산 현황(2026. 8월말 법인 명의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A+B+C)	순 자 산			부채(C)	비고
		계	부동산(A)	동산(B)		
합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가. 재산 성질별 현황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m ²	총가액 (백만원)	비 고 (용 도)
계							

첨부서류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

○ 건 물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등기부상)	지방세과표	총가액 (백만원)	비 고 (용 도)
계							

첨부서류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

2) 수익용 기본재산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토 지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m ²	총가액 (백만원)	비 고 (용 도)
계							

○ 전 물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등기부상)	총가액 (천원)	연간수입 (백만원)	비고 (용도)
계							

첨부서류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을 구체적으로 기재(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	--

3) 기타재산(보통재산)

○

4) 동산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 액(백만원)	비 고
계			

첨부서류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로 첨부
------	-----------------------------

5) 부채현황

종 목	내 용	금 액(백만원)	부채비율	비 고
계				(부채/순자산) ×100

첨부서류	부채 증빙서류
------	---------

3.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총괄)

시설구분	계	직영시설	수탁시설	기타
개소수				

※ 최근 5년간(2022년~현재까지) 법인이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자료 기재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시설 종류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건축연면적)	운영기간	사업내용	법인지원금 (연간)	비고
직영								
수탁								

첨부서류	사회복지시설신고필증 등 증빙서류 첨부
------	----------------------

다. 법인산하 시설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등 관련 평가 실적

시설명	평가일	평가기관	평가결과	비고

첨부서류	평가결과서 등 사본
------	------------

라. 법인산하 시설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등 각종 수상 실적

시설명	수상일	수여기관	수상내용	수상결과	비고

첨부서류	표창장 등 사본
------	----------

4. 법인 수입 현황 및 투자 이행 실적

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연간 수입액

(단위 : 백만원)

수입내역	금 액						비 고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수익사업							판매 관리 생산 등
재산사업							임대료 등
회비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후원금							종교단체 등
기타							

나. 재정투자 이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연도별	법인전입금 약정	법인전입금	이행율(%)	비고
계					

첨부서류	계좌이체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	--------------------

※ 최근 5년간(2022년~현재까지) 법인이 수탁중인 복지시설에 대한 재정투자이행실적

II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1. 시설장 및 종사자

가. 시설장(내정자)

임명방법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공개모집 법인임명						

나. 시설장(내정자) 자격증 취득 현황

취득일자	자격증종류	시행기관	비고

첨부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	--

다. 시설장(내정자) 근무경력

구분	근무시설명	근무기간	직책	비고
계		년		
노인복지시설				

라. 장기근속종사자 내부승진 실적

연번	성명	근무기간	직책	비고

마.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지위보장 계획

첨부서류	인사관리 규정안, 종사자 채용 관련 기준 규정안, 인력구성방안 및 채용계획안, 종사자 자격증 확인서류, 복리후생 계획안, 종사자 내부승진 관련 증빙서류
------	--

2. 사업계획의 전문성

가. 시설종사자 현황

연번	직위	성명	자격증	임용일	비 고

나. 종사자 교육 현황

연번	교육일시	교육명	참가자	비고

3. 재정

가. 최근 5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수지결산서)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시설명	계	보조금	사업수입	법인(단체) 전입금	후원금	기타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 진달래마을 시설 관련 자료를 연도별 작성

나. 재정운용 및 자부담 확보 방안(재정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총 예산액	자 부 담 액					자부담 비 율 (%)	자부담액 확 보 방 법	비고
		계	법인 전입금	사업 수입	후원금	잡수입			
								※ 자부담액 예산과목별로 작성	

다.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첨부서류	최근 5년간 법인 재무제표
------	----------------

III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1.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관리 계획
2. 지역민(이용자)의 욕구 만족 및 이용을 위한 계획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계획서 [2026. 11. 14. ~ 2031. 11. 13.]

I. 사 업 명 :

II.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
-

III. 조직 구성 계획

- 조직구성(조직도) 및 업무분장
- 종사자 고용승계 및 확보계획
 - ※ 구체적으로 작성

IV. 사업 추진 계획

1.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구체적 작성)

2.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사업내용, 운영방법, 운영 프로그램 등 작성
(사업계획 요약서 별도 작성 첨부)
- 기본 프로그램 포함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방법, 운영계획, 지역사회 협력방안,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부담액 등 구체적 작성

※ 2026~2031년 세입·세출 예산서 : 별도첨부

V. 시설 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3.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4. 재정운영계획
5. 재정확충방안

VI. 지역사회와의 연대 구축방안

1. 지역사회 공신력(신뢰성 등) 제고방안
2.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3. 지역사회자원 동원 및 활용방안

VII. 기타사항

※ 시설운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실현가능성, 지역적합성 등을 평가

작성시 유의사항 등

[유의사항]

- 서식 작성내용은 사업심사 및 선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므로
정의있게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함
 - ※ 신청서 접수 후 필요시 관련자료 추가 요청할 수 있으나,
제출한 내용 변경 불가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 예산운영계획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토대로 예산항목을 구분
설정하되 산출근거에 의거 편성
-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액으로 편성하여야 함
- 모든 서류작성은 A4 규격에 양면으로 작성 제출

「별첨 2」

「동여수노인복지관 및 분관」 평가 배점표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 문항(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가. 수탁자의 적격성 (36)	A. 법인의 적격성 (16)	A1. 법인의 유형 ·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복지시설 수탁의 연계성은?	4	3	2	1	
		A2. 법인의 이사회 구성(외부이사 구성 등)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4	3	2	1	
		A3.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4	3	2	1	
		A4. 최근 5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및 조치 결과는?	4	3	2	1	*신생법인 제외
	B. 법인의 사업능력 (20)	B1.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주사무소 마련, 담당직원 등을 갖추고 있는가?	4	3	2	1	
		B2. 법인의 이사회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4	3	2	1	
		B3. 신청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정도는 ?	4	3	2	1	
		B4. 최근 5년간 법인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익사업의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4	3	2	1	*신생법인 제외
		B5. 최근 5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은?	4	3	2	1	*신생법인 제외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8)	C. 시설장 및 종사자 (20)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경력 및 시설운영능력은?	4	3	2	1	
		C2. 종사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계획은 어떠한가?	8	5	2	-	
		C3.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지위보장 계획의 적정성은?	8	5	2	-	
	D. 사업계획의 전문성 (14)	D1. 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구체적이고 적정한가?	7	5	3	1	
		D2.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는?	7	5	3	1	
	E. 재정 (14)	E1. 재정운영을 위한 자부담 확보방안은 어떠한가?	4	3	2	1	
		E2. 운영할 복지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은?	4	3	2	1	
		E3.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은 어떠한가?	6	4	2	-	
다. 지역사회 공신력 (14)	F. 지역사회 관계(14)	F1. 사업계획서상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관리계획은 어떠한가?	7	5	3	1	
		F2. 지역민(이용자)의 욕구 만족 및 이용을 위한 계획은 어떠한가?	7	5	3	1	
라. 종합 의견(2)	G. 종합 의견(2)	G1. 심사위원 종합의견	2	-	1	-	
계			100	70	43	16	

※ A4, B4, B5 는 신생법인 미해당 항목으로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88점 만점으로 채점 후 100점 환산

※ 신생법인 산식 = 취득점수 + {신생법인 미해당 점수(제외)}×(취득점수/총점수)}=최종점수

조발항 등 어항 내 방치선박 제거 공고

우리 시 화정면 조발항 및 돌산읍 작금항 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방치선박이 어항 이용의 효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장애물 등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026-2779호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4. ~ 2026. 9. 14. (10일간)
2. 위 치 : 화정면 조발항 및 돌산읍 작금항 내 어항구역 등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폐선박 및 바지선 등
4. 장애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 나. 아울러, 어항 내에 장애물을 방치한 행위자(소유자 파악 시)에 대하여는 「어촌·어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화정면 조발항 내 수역(화정면 조발리 149-9 인근)		
적치물 종류	폐바지선		
어항관리청	여수시	어 항 분 류	마을공동어항
처리 예정일자	2026년 9월 14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장애물(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9월 14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4일

여 수 시 장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돌산읍 작금항 내(돌산읍 금성리 847-10 인근)		
적치물 종류	방치선박		
어항관리청	여수시	어 항 분 류	정주어항
처리 예정일자	2026년 9월 14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장애물(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9월 14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4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6 -2785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주정차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7.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2026. 9. 7. ~ 2026. 9. 21. (15일)
2. 대 상 자: 불임참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최*희 등 93건)
3. 공고내용
 - 가. 귀하의 소유차량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카메라(고정,이동식)또는 안전신문고로 단속되었기에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나. 위 사전통지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여수시 주차차량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659-5864)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단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없이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주차차량과(☎061-659-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대상자 내역(2026. 8. 1. ~ 2026. 8. 31.)

연번	납부자명	부과대상	단속일시	단속장소	반송 주소	부과내용	반송사유	비고
1	최*희	09저****	2026-06-21 11:05	교통시장입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사전	반송함 투입	
2	서*광	150마****	2026-07-08 19:17	하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미1길	사전	반송함 투입	
3	(주)삼**장	01보****	2026-08-22 22:00	갯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쌍봉로	사전	반송함 투입	
4	강*욱	171하****	2026-07-03 09:54	엑스포타운 공영주차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사전	수취인불명	
5	김*욱	313라****	2026-08-16 07:33	웅천동 꿈에그린 중간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무선6길	사전	수취인불명	
6	이*표	76나****	2026-07-20 15:33	장어골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사전	반송함 투입	
7	김*원	106바****	2026-07-25 13:48	흥국실내체육관사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팔마4길	사전	반송함 투입	
8	(주)삼**장	01보****	2026-08-16 20:51	보은식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쌍봉로	사전	수취인불명	
9	임*용	180나****	2026-08-23 13:51	투썸플레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호로	사전	수취인불명	
10	김*강	175라****	2026-07-27 13:30	본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둔덕2길	사전	반송함 투입	
11	서*열	113수****	2026-08-06 19:48	여문로 농협하나로마트삼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백년대로297번길	사전	수취인불명	
12	김*욱	108보****	2026-08-07 14:20	금호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사전	배달누락	
13	방*호	143나****	2026-08-09 14:24	화이트라벨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38길	사전	주소불명	
14	주식회사 코*****날	170주****	2026-07-26 14:09	진남상가공영주차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사전	반송함 투입	
15	장*미	225호****	2026-07-22 10:14	신월초등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산새철1길	사전	반송함 투입	
16	최*희	72구****	2026-08-13 15:46	신가가마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 금오서부로	사전	이사불명	
17	유*수	142호****	2026-06-24 09:51	올리브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미평로	사전	반송함 투입	
18	주식회사 선*	26두****	2026-08-25 11:55	이마트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동	사전	수취인불명	
19	박*용	327조****	2026-08-11 11:22	이마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수북7길	사전	이사불명	
20	김*홍	225하****	2026-06-05 07:09	이현시아동발달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예교길	사전	수취인불명	
21	주식회사 진*강	85루****	2026-07-28 20:09	모이핀부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만성로	사전	이사불명	
22	안*영	169무****	2026-07-28 14:16	여수농협중앙회앞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사전	반송함 투입	
23	이*권	37여****	2026-08-05 11:35	덕충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영은문길	사전	반송함 투입	
24	김*홍	225하****	2026-05-23 21:48	여천시외버스터미널앞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예교길	사전	수취인불명	
25	최*정	11루****	2026-07-23 14:36	쌍용더플래티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거북선공원1길	사전	반송함 투입	
26	서*광	150마****	2026-08-01 12:17	서교동 금진상회앞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미1길	사전	주소불명	
27	(주)케*****솔	89다****	2026-08-03 17:14	부영3차사거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사전	수취인불명	
28	(주)케*****솔	89다****	2026-07-27 14:36	부영3차사거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사전	반송함 투입	
29	양*승	27나****	2026-08-01 17:39	여문파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무선로	사전	반송함 투입	
30	조*미	185너****	2026-08-02 19:21	광림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충민로	사전	이사불명	
31	김*열	18보****	2026-07-22 07:05	신동아 아파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사전	배달누락	
32	이*미	17호****	2026-06-20 19:35	라이프워크	세종특별자치시 도음1로	사전	반송함 투입	
33	임*길	27수****	2026-07-28 09:57	금호폴리켄1공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쌍봉로	사전	반송함 투입	
34	박*용	53라****	2026-08-06 17:23	양지초등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중마로	사전	이사불명	
35	김*득	07버****	2026-08-07 12:55	여수농협중앙회앞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통제영3길	사전	수취인불명	
36	김*원	106바****	2026-08-13 14:38	문수동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팔마4길	사전	수취인불명	
37	유*수	142호****	2026-07-08 16:22	아트박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미평로	사전	반송함 투입	
38	김*경	276조****	2026-08-08 16:20	라이프워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9길	사전	반송함 투입	
39	김*홍	225하****	2026-05-21 07:20	쌍봉사거리농협앞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예교길	사전	수취인불명	
40	최*은	222하****	2026-07-06 09:20	여문로 송원백화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박람회길	사전	반송함 투입	

41	김*배	36저****	2026-06-30 14:30	중앙수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장로	사전	반송함 투입	
42	김*곤	22소****	2026-06-18 16:39	김형제 고기의철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웅천남4로	사전	반송함 투입	
43	배*영	172허****	2026-07-18 16:44	해양공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원2길	사전	반송함 투입	
44	정*철	17버****	2026-08-02 07:18	여문로 홍화아파트입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사전	반송함 투입	
45	주식회사 온****씨	156하****	2026-07-25 10:14	한우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읍대6길	사전	이사불명	
46	최*영	237허****	2026-07-30 20:20	구석지돌판한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유동3길	사전	주소불명	
47	송*중	297나****	2026-07-28 11:55	삼대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10번길	사전	주소불명	
48	양*승	27나****	2026-07-25 21:45	여문파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무선로	사전	반송함 투입	
49	(주)케****솔	89다****	2026-08-12 16:30	부영3차사거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사전	반송함 투입	
50	박*용	327조****	2026-08-25 11:55	이마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수북7길	사전	이사불명	
51	고****솔(주)	84나****	2026-08-20 08:54	부영초등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봉두로	사전	반송함 투입	
52	마*****)	345허****	2026-08-18 10:24	신기초등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웅천북로	사전	수취인불명	
53	임*일	04모****	2026-07-21 21:20	이마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송도로182번길	사전	반송함 투입	
54	김*수	42허****	2026-06-24 14:22	픽미픽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중앙용소1길	사전	반송함 투입	
55	신*천	263서****	2026-08-02 22:11	서시장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서1길	사전	이사불명	
56	김*영	45무****	2026-08-18 20:22	서브웨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양지1길	사전	반송함 투입	
57	(유)케****스	22고****	2026-07-20 07:57	죽림 양우내안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향만대로	사전	이사불명	
58	주식회사 알***야	242거****	2026-08-04 08:26	CU여수오션빌딩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60번길	사전	이사불명	
59	강*중	93가****	2026-07-01 10:09	강남스타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율촌면 대죽도길	사전	반송함 투입	
60	(주)케****솔	89다****	2026-07-21 19:55	담소정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사전	반송함 투입	
61	(주)삼**컴	78소****	2026-07-21 15:56	장어골목	충청남도 아산시 고불로	사전	반송함 투입	
62	순****용	21러****	2026-07-10 10:41	다이소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사전	주소불명	
63	최*민	26구****	2026-07-30 09:58	김경해아포레 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박람회길	사전	반송함 투입	
64	임*화	289거****	2026-08-15 14:35	다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사전	수취인불명	
65	이*록	34버****	2026-07-07 12:49	해어망고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다길	사전	수취인불명	
66	이*수	30머****	2026-08-02 12:07	이디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로140번길	사전	반송함 투입	
67	허*선	38호****	2026-07-14 11:00	여천좌수영악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백연길	사전	반송함 투입	
68	주식회사 온**품	282마****	2026-07-18 15:12	진남상가 공영주차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매월2로	사전	주소불명	
69	김*홍	225하****	2026-06-06 20:31	여천시외버스터미널앞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예교길	사전	수취인불명	
70	고****솔(주)	84나****	2026-07-30 08:17	부영초등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봉두로	사전	반송함 투입	
71	노*오	96머****	2026-08-18 19:14	여천로컬푸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성산5길	사전	이사불명	
72	김*만	800루****	2026-08-05 10:50	우미이노스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연지길	사전	수취인불명	
73	유한회사 나**셀	238도****	2026-08-01 12:54	대성빌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산로	사전	이사불명	
74	장*순	275보****	2026-07-31 14:09	선여시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3로	사전	주소불명	
75	권*미	30주****	2026-07-30 16:08	쌍용 플래티늄 KT뒤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무선4길	사전	반송함 투입	
76	(주)케****솔	89다****	2026-07-30 20:30	CU편의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사전	반송함 투입	
77	박*구	131너****	2026-07-28 11:43	서울애당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회재로	사전	수취인불명	
78	정*기	84부****	2026-07-27 17:18	여천로컬푸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산2길	사전	반송함 투입	
79	손*인	20소****	2026-08-01 21:02	황금마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사전	반송함 투입	
80	정*연	84보****	2026-08-12 10:30	여서주공아파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연등1길	사전	이사불명	
81	김*선	04조****	2026-08-16 13:43	맛나감자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월등면 월등로	사전	수취인불명	
82	장*만	11저****	2026-08-14 10:47	순이네밥상	부산광역시 서구 해동이로22번길	사전	수취인불명	
83	주식회사 삼*르	91러****	2026-08-18 14:37	다이나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여순로	사전	이사불명	
84	UK*****)	315거****	2026-08-15 19:11	여수농협중앙회앞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8길	사전	주소불명	
85	김*식	167고****	2026-07-21 15:49	국동 서희아파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상하동길	사전	수취인불명	
86	이재*****)	49라****	2026-08-01 10:44	삼대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61길	사전	수취인불명	
87	이*균	26구****	2026-08-22 21:59	하멜전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사전	수취인불명	
88	주*성	19거****	2026-08-14 13:38	우리는행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남신월4길	사전	수취인불명	
89	주식회사 쏘*	149허****	2026-08-17 20:08	여수엑스포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안길	사전	수취인불명	
90	KH*****)R	40두****	2025-07-02 11:26	뽕뽕뽕뽕집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사전	반송함 투입	
91	위*희	194허****	2026-04-25 14:16	기업은행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2로	사전	이사불명	
92	윤*찬	398로****	2026-05-12 14:02	광양기정떡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궁2길	사전	반송함 투입	
93	윤*찬	398로****	2026-06-02 14:16	정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궁2길	사전	반송함 투입	

여수시 공고 제2026-2786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분(독촉)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2026. 9. 7. ~ 2026. 9. 21. (15일)
2. 대 상 자: 불임참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길, 박*중 등 103건)
3. 공고내용

☐ 부과 고지서 반송

가.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여수시청 주차차량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과태료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촉 고지서 반송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증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주차차량과(☎061-659-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대상자 내역 (2026. 8. 1. ~ 2026. 8. 31.)

연번	납부자명	부과대상	단속일시	단속장소	반송 주소	부과내용	반송사유	비고
1	박*중	66너****	2026-05-09 15:40	선소공영주차장앞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길	정기	이사불명	
2	김*완	177하****	2026-05-16 11:11	중앙연합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박람회길	정기	주소불명	
3	정*영	07머****	2026-05-10 13:54	기아오토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정기	반송함 투입	
4	(주)선****G	54러****	2026-06-07 15:45	CGV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산단로13번길	정기	수취인불명	
5	(주)케*****술	89다****	2026-05-29 16:09	부영3차사거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정기	반송함 투입	
6	추*열	66도****	2026-05-31 14:03	화물식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정2길	정기	수취인불명	
7	하*용	26주****	2026-06-01 07:18	용기공원공영주차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눈소10길	정기	수취인불명	
8	오*욱	42서****	2026-06-02 10:20	황금코다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문2로	정기	이사불명	
9	정*용	25무****	2026-06-13 03:32	동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서동5길	정기	수취인불명	
10	(주)케*****술	89다****	2026-05-28 09:44	미카도스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정기	반송함 투입	
11	이*진	226호****	2026-06-01 16:29	설랜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문2로	정기	주소불명	
12	(주)신***조	88로****	2026-06-17 07:43	한재사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정기	이사불명	
13	김*엽	26두****	2026-06-02 17:22	부영3차아파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마상길	정기	이사불명	
14	전*현	125하****	2026-06-16 20:02	학동 공영주차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선소로	정기	반송함 투입	
15	정*용	25무****	2026-06-17 16:03	동양당한약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서동5길	정기	수취인불명	
16	최*희	09저****	2026-06-21 11:05	교동시장입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정기	반송함 투입	
17	(주)케*****술	89다****	2026-06-08 10:50	이노티안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정기	반송함 투입	
18	하나*****사	72조****	2026-07-11 18:49	구봉가스충전소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정기	수취인불명	
19	이*균	26구****	2026-07-18 18:29	국동항수변공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정기	주소불명	
20	이*수	72구****	2026-07-14 15:48	대흥약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산남4길	정기	이사불명	
21	(주)우***텍	179머****	2026-07-12 15:05	여수농협중앙회앞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주동로	정기	수취인불명	
22	(주)선****G	54러****	2026-06-14 17:18	한국병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산단로13번길	정기	수취인불명	
23	조*연	806버****	2026-06-30 08:30	신기초등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미평1길	정기	반송함 투입	
24	김*아	100너****	2026-07-15 21:27	비고시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산남3길	정기	이사불명	
25	주식회사 뽕*** 카	101호****	2026-06-01 20:06	선소공영주차장앞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정기	반송함 투입	
26	권*숙	291무****	2026-06-20 18:28	김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상관길	정기	이사불명	
27	한*철	228호****	2026-05-29 20:12	계동치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암로	정기	주소불명	
28	한*훈	152라****	2026-04-19 07:20	한려식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통제영3길	정기	주소불명	
29	명*영	91루****	2026-06-08 18:08	내조국국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해안로237번길	정기	수취인불명	
30	주식회사 삼*르	91러****	2026-06-01 10:50	지산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여순로	정기	이사불명	
31	강*욱	171하****	2026-06-05 09:57	엑스포타운 공영주차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정기	주소불명	
32	주식회사 메 *****설	63로****	2026-05-28 14:03	기아오토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저전3길	정기	수취인불명	
33	(주)뉴***광	전남70자****	2026-05-27 09:08	부영3차사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여순로	정기	이사불명	
34	주식회사 선*	26두****	2026-06-12 15:24	여수농협중앙회앞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화동	정기	수취인불명	
35	신*숙	47고****	2026-07-03 16:50	중흥식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동신흥길	정기	수취인불명	
36	김*수	42허****	2026-06-24 14:22	픽미픽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중마용소1길	정기	반송함 투입	
37	순 *****	21러****	2026-07-10 10:41	다이소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정기	주소불명	
38	이*록	34버****	2026-07-07 12:49	해어망고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다길	정기	이사불명	
39	주식회사 시*	251노****	2026-06-23 07:58	베스킨라빈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망마로	정기	수취인불명	
40	김*득	07버****	2026-06-01 08:07	쌍봉사거리농협앞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통제영3길	정기	수취인불명	

41	정*주	138너****	2026-06-16 20:48	여천로컬푸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정기	주소불명	
42	신*우	104무****	2026-05-24 20:11	일품대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조성면 월평길	정기	이사불명	
43	김*엽	26두****	2026-05-29 17:55	다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마상길	정기	이사불명	
44	임*섭	19로****	2026-06-21 21:17	현대산업아파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정기	이사불명	
45	남*진	120허****	2025-08-02 17:45	여수농협중앙회앞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서2로	정기	주소불명	
46	김*찬	226무****	2026-06-08 10:01	금호플리캠1공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정기	수취인불명	
47	이*진	165호****	2026-05-06 10:09	LG화학 IPA열병합공장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로	정기	반송함 투입	
48	안*엘	133하****	2026-06-19 16:29	올리브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금봉로	정기	반송함 투입	
49	이*열	209무****	2026-05-21 11:51	용기공원공영주차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자산공원길	정기	이사불명	
50	김*영	233호****	2026-05-27 18:01	여문로 농협하나로마트삼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한재로	정기	이사불명	
51	(주)케*****솔	89다****	2026-05-25 16:28	부영3차사거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정기	이사불명	
52	(주)환**상	95보****	2026-06-19 16:54	타이어테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성산로	정기	이사불명	
53	김*철	276누****	2026-05-18 10:09	금호플리캠1공장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마방길	정기	이사불명	
54	이*진	165호****	2026-05-15 09:55	LG화학 IPA열병합공장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로	정기	반송함 투입	
55	유*기	188더****	2026-06-07 13:40	공영주차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안산1길	정기	수취인불명	
56	양*승	27나****	2026-05-24 15:35	여문로 송원백화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무선로	정기	반송함 투입	
57	주식회사 선*	26두****	2026-06-08 14:11	에담약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화동	정기	수취인불명	
58	추*열	66도****	2026-05-27 16:23	투썸플레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정2길	정기	이사불명	
59	강*중	93가****	2025-10-30 15:12	한재사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율촌면 대죽도길	독촉	반송함 투입	
60	KH*****R	40두****	2025-07-02 11:26	뽕뽕뽕집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정기	반송함 투입	
61	KH*****R	40두****	2025-07-02 11:26	뽕뽕뽕집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독촉	반송함 투입	
62	박*중	66너****	2025-09-20 10:53	공영주차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길	독촉	이사불명	
63	강*중	93가****	2025-10-31 13:40	한재사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율촌면 대죽도길	독촉	반송함 투입	
64	신*호	170다****	2025-10-20 10:12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독촉	반송함 투입	
65	김*웅	18머****	2026-02-28 22:13	탐앤탐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부흥로	독촉	반송함 투입	
66	곽*만	64조****	2026-03-20 16:29	삼선미나주곰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시청서2길	독촉	반송함 투입	
67	강*중	93가****	2026-03-30 16:09	서경당약업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율촌면 대죽도길	정기	반송함 투입	
68	김*수	154구****	2026-04-30 10:42	기업은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연등4길	독촉	수취인불명	
69	백*산	95거****	2026-06-10 16:21	하나로마트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로	독촉	수취인부재	
70	주식회사 에*****조	82무****	2026-05-10 20:20	죽발보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77길	정기	반송함 투입	
71	주식회사 에*****조	82무****	2026-05-10 20:20	죽발보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77길	독촉	반송함 투입	
72	주식회사 에*****드	177하****	2026-02-19 13:52	공영주차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25번길	독촉	반송함 투입	
73	박*연	221하****	2026-03-06 10:16	은혜요양병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미평로	정기	반송함 투입	
74	박*연	221하****	2026-03-06 10:16	은혜요양병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미평로	독촉	반송함 투입	
75	장*정	199하****	2026-01-06 13:57	카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신로	독촉	반송함 투입	
76	강*중	369소****	2026-03-28 16:10	한재사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율촌면 대죽도길	정기	반송함 투입	
77	(주)우**업	229호****	2026-01-31 20:49	해양공원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독촉	수취인불명	
78	RI*****L	14거****	2026-01-06 07:41	신기아파트앞교통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연등1길	독촉	반송함 투입	
79	정*조	93가****	2026-01-25 11:08	어항단지입구교차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옥곡면 명주로	독촉	수취인불명	
80	강*중	67보****	2025-12-19 10:25	여서로터리(연합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율촌면 대죽도길	독촉	반송함 투입	

81	RI*****L	14거****	2025-12-27 14:03	부름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연등1길	독촉	반송함 투입	
82	김*경	224하****	2025-11-17 11:10	DB생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194번길	독촉	반송함 투입	
83	(주)탐*****아	73고****	2026-01-06 11:44	휴인테리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독촉	수취인불명	
84	홍*영	175하****	2025-12-02 20:01	목구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사마루길	독촉	반송함 투입	
85	RI*****L	14거****	2025-12-14 10:48	여천로컬푸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연등1길	독촉	이사불명	
86	RI*****L	14거****	2025-12-25 07:40	신기아파트앞교통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연등1길	독촉	반송함 투입	
87	김*찬	226무****	2025-12-05 10:01	금호폴리캠1공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길	독촉	수취인불명	
88	강*아	48두****	2025-10-12 16:14	롯데캐슬마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도군 노화읍 노화로870번길	독촉	이사불명	
89	김*수	221호****	2026-01-26 11:55	용기공원영주차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원길	독촉	수취인불명	
90	김*아	100너****	2026-06-01 10:41	금호폴리캠1공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산남3길	독촉	이사불명	
91	김*광	239두****	2026-06-16 10:06	신기동 여천좌수영악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문2로	독촉	반송함 투입	
92	윤*찬	398로****	2026-05-12 14:02	광양기정떡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궁2길	정기	반송함 투입	
93	윤*찬	398로****	2026-05-12 14:02	광양기정떡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궁2길	독촉	반송함 투입	
94	강*종	369소****	2026-06-04 12:56	선소공업주차장앞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율촌면 대늬도길	정기	반송함 투입	
95	윤*찬	398로****	2026-06-02 14:16	정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궁2길	정기	반송함 투입	
96	윤*찬	398로****	2026-03-21 14:46	심마니건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궁2길	정기	반송함 투입	
97	윤*찬	398로****	2026-03-21 14:46	심마니건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궁2길	독촉	반송함 투입	
98	양*승	27나****	2026-04-11 12:12	여문로 농협하나로마트삼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무선로	독촉	반송함 투입	
99	유*환	352구****	2026-05-21 11:04	수정사거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정기	반송함 투입	
100	서*광	150마****	2026-06-15 16:30	쌍용 플레티넘 공용 주차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64가길	정기	반송함 투입	
101	강*식	369부****	2026-04-10 13:38	먹성집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로60번길	독촉	이사불명	
102	서*진	199하****	2026-04-20 10:25	한재사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산1로	독촉	수취인불명	
103	서*광	150마****	2026-06-10 16:59	여문로 송원백화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64가길	정기	반송함 투입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개찰결과 공고

「여수 안산동 2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개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여수 안산동 2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738번지
- 다. 사업주체 : (주)부영주택 대표 최양환
- 라. 규 모 : 지하 4층/지상 21층, 5동,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추첨가격 및 예정가격

- 가. 추첨가격 : 3, 5, 6, 10
- 나. 예정가격 : 72,294,225원

3. 개찰결과

- 가. 입찰참여업체 : (주)정진이앤씨 등 8개 업체
- 나. 개찰일시 : 2026. 9. 7.(월).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다. 예비순위(상위 3개 업체)
 - 1) 1위업체 : (주)정진이앤씨 대표 정찬욱
 - 2) 2위업체 : 주식회사 미스터스트럭처기술사사무소 대표 김장윤
 - 3) 3위업체 : 주식회사 다운에스텍 대표 진선용

4. 행정사항

상위 3개 업체는 본 공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실 확인 제출서류를 2026. 9. 11.(금) 18:00까지 우리 시(허가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안전점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끝.

2026. 9. 7.

여 수 시 장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9. 8.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8.(화) ~ 2026. 9. 16.(수)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여수시 안산동 1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42 ☎ 02-3774-5500]

(주)부영주택 대표 최양환

다. 설 계 자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306(계림동) 신양빌딩 ㈜이건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양상훈

라. 시 공 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42 (주)부영주택 대표 최양환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안산동 737번지
- 대지면적 : 32,466.1㎡
- 연 면 적 : 121,072.3939㎡
- 규 모 : 아파트 8개동 (지하4층 / 지상 25층)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
- 세 대 수 : 593세대
- 공사기간 : 2020. 5. 15 ~ 2027. 10. 31.
- 사업승인일 : 2020. 5. 15.

바. 안전점검비용 : 96,043,660원(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비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 초 금 액 : 93,162,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미포함)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 ▶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 산출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항 목		단위	횟수	비 고
정기 점검	건축물	회	3	※ 일정 및 횟수, 점검비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협의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회	2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회	2	
	갯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회	2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회	2	
초기 점검	건축물	회	1	
계			12	

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9.17.\(목\) 10:00 ~ 2026.9.21.\(월\)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시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 [안전점검비 입찰서](#)

라. 유의사항

-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 2)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8)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개찰일시

가. 개찰일시 : [2026.9.21.\(월\) 14: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 순위가 확정됩니다.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률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률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9.22.\(화\) 09:00 ~ 2026.9.30.\(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여수시 시청로 1, 1층)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기 바람.(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7.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10.1.\(목\) 09:00 ~ 2026.10.7.\(수\) 12: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여수시 시청로 1, 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서 : 평점 및 평점산정근거 기재
- 3) 참여기술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이의제기 시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명기 제출 시 대상 제외)

라.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과 방문열람을 원칙으로 함(사진 촬영 불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마. 이의신청방법: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응모자격 :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여수시 공고 제2026-2311호, 2026. 7. 24.]에 등록된 업체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2026. 7. 24.)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함.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다. 평가기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 별표2]

※ 낙찰하한율(86.745%) 미달은 평가대상 제외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름.
※ 95점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7) 제출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여수시 건축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함.

10. 재정상태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1호 서식]
- 3)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별지 제2-2호 서식]
- 4) 서약서(서식6)(인감날인)
- 5) 안전점검비 입찰서[별지 제3호 서식]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별지 제2-1호]서식 자기평가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1)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1호 서식]
 -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별지 제2-2호 서식]
 - 3)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확인서[서식 1]
 - 5)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확인서[서식 2]
 - 6)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3] 및 증빙서류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 및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7) 업무중첩도[서식4] 및 증빙서류
 - 8)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빙자료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9)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서식5]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확인서 등
 - 업무중첩도 및 증빙서류
 - 10)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순서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또는 행정처분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교육 이수확인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3) 상기"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 함
- 4) 상기"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사실확인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거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이 없는 업체의 입찰
-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 아.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 자.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따릅니다.
- 차.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타.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 및 가설구조물 등 정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안전점검 비용은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나라장터 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 까지도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허가과(☎061-659-40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여수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1부.
3. 예정공정표 1부. 끝.

(표지 양식)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공사명 : 여수 안산동 1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2026년 월 일

(회사명 기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기간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9. 기술자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책 임						
참 여						
비평가						
비평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입찰자(대표자)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정권자 귀하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 권자	
참여 업체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
		점검·진단 평가결과	4			예) 시정처분(건), 부실처분(건)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예) 입찰참가제한(월), 영업정지(월)
	수행실적	실적(건수)	15			예) 정기안전점검(건)
		실적(금액)	15			예) 정기안전점검(억원)
	업무중첩도		5			예) 0개소(00신축공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1			예) 특허 0건
		투자실적	2			예) 00(%)
	계		50			
책임 기술자	자격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
	경력		7			예) 00(년)
	실적		12			예) 정기안전점검(건)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업무중첩도		2			예) 0개소(00신축공사)
	계		30			
참여 기술자	자격		6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6			예) 00(년)
	실적		5			예) 정기안전점검(건)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계		2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가. 참여업체	50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1) 신용도	12					
(가) 재정상태 건실도	5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4.0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나) 점검·진단 평가결과	4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2) 수행실적	30					
(가) 실적(건수)	1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 이상	8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15.0	14.3	13.6	12.9	12.2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나) 실적(금액)	1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금액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금액 × 0.8				

		<table><tr><td>5억원이상</td><td>5억원미만 4억원이상</td><td>4억원미만 3억원이상</td><td>3억원미만 2억원이상</td><td>2억원미만</td></tr><tr><td>15.0</td><td>14.3</td><td>13.6</td><td>12.9</td><td>12.2</td></tr></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예) 최근 5년간 실적계산 방법(이하 실적계산 방식 동일) ① 안전점검이 준공된 경우 2015.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 까지의 해당되는 안전점검비] * 준공실적(원)=30억(원)×{[(122일+(2년×365일))÷(4년×365일)] ② 안전점검을 수행중인 경우 2015.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7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7.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5.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5. 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안전점검비] * 수행실적(원)=30억(원)×{[(4년×365일)+243일]÷(7년×365일)}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1.5배를 적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5.0	14.3	13.6	12.9	12.2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5.0	14.3	13.6	12.9	12.2												
산출근거		- 금액 : 억원	평가점수 : 점													
(3) 업무중첩도	5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tr><td>1개소 이하</td><td>2개소</td><td>3개소</td><td>4개소 이상</td></tr><tr><td>5.0</td><td>4.0</td><td>3.0</td><td>2.0</td></tr></table> * 수행중인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은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5.0	4.0	3.0	2.0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5.0	4.0	3.0	2.0													
산출근거		- 개소 :	평가점수 : 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3															
(가) 기술개발 실적	1	-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산출기준 : (건설신기술 건수×0.5)+(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수×0.3)+(건설기술에 대한 실용신안×0.15) <table><tr><td>구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r><tr><td>특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나) 투자실적	2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따라 평가														

		<table><tr><td>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d>1%미만 0.5%이상</td><td>0.5%미만</td></tr><tr><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0.5%미만	2.0	1.8	1.6	1.4	1.2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0.5%미만										
2.0	1.8	1.6	1.4	1.2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나. 책임기술자	30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시 실격)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table><tr><td>건축구조기술사</td><td>기타 자격없음</td></tr><tr><td>6.0</td><td>4.5</td></tr></table>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산출근거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 자격내용 :		평가점수 : 점										
(2) 경력	7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table><tr><td>10년이상</td><td>10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7년이상</td><td>7년미만</td></tr><tr><td>7.0</td><td>6.5</td><td>6.0</td><td>5.5</td><td>5.0</td></tr></table>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5	6.0	5.5	5.0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5	6.0	5.5	5.0										
산출근거		- 경력 :		평가점수 : 점										
(3) 실적	12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12.0</td><td>11.4</td><td>10.8</td><td>10.2</td><td>9.6</td></tr></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1.4	10.8	10.2	9.6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1.4	10.8	10.2	9.6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평가점수 : 점										

(5) 업무중첩도	2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tr><td>1개소 이하</td><td>2개소</td><td>3개소</td><td>4개소 이상</td></tr><tr><td>2.0</td><td>1.5</td><td>1.0</td><td>0.5</td></tr></table>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2.0	1.5	1.0	0.5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2.0	1.5	1.0	0.5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다. 참여기술자	20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table><tr><td>고급 이상</td><td>중급</td><td>초급</td></tr><tr><td>6.0</td><td>5.0</td><td>4.0</td></tr></table>				고급 이상	중급	초급	6.0	5.0	4.0				
고급 이상	중급	초급													
6.0	5.0	4.0													
산출근거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평가점수 : 점											
(2) 경력	6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table><tr><td>7년 이상</td><td>7년미만 6년 이상</td><td>6년미만 5년 이상</td><td>5년미만 4년 이상</td><td>4년미만</td></tr><tr><td>6.0</td><td>5.5</td><td>5.0</td><td>4.5</td><td>4.0</td></tr></table>				7년 이상	7년미만 6년 이상	6년미만 5년 이상	5년미만 4년 이상	4년미만	6.0	5.5	5.0	4.5	4.0
7년 이상	7년미만 6년 이상	6년미만 5년 이상	5년미만 4년 이상	4년미만											
6.0	5.5	5.0	4.5	4.0											
산출근거		- 경력 :		평가점수 : 점											
(3) 실적	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5.0</td><td>4.7</td><td>4.4</td><td>4.1</td><td>3.8</td></tr></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7	4.4	4.1	3.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7	4.4	4.1	3.8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평가점수 : 점											

안전점검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VAT 미포함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정권자 귀하

점검 · 진단 평가결과

용역업체 (대표자)	용역명	조치기관명	평가내용		비고
			평가결과	사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최근 3년]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제 재 기 간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관	비 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분 야	성 명	구 분	정 지 기 간	사 유 및 제 재 기 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서식4]

업무 중첩도

연 번	용 역 명	준 공 금 액 (천 원)	발 주 처	용 역 기 간	참 여 분 야	비 고
합 계						

※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용역 잔여 과업 기간

[여수시 공고 제2026-231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른 발주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여수시장

1. 관련근거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마.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연번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1	(주)한국구조안전연구원	조철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로 160, 4층	건축
2	(주)우리안전기술원	윤영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고지5길 3	건축
3	(주)미스터스트럭처 기술사사무소	김장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우정로 72, 416호	건축
4	(주)케이제이 구조기술사사무소	김정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객사2길 7-1, 3층	건축
5	대한건설기술단(주)	김보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중앙로 317	건축
6	메타구조안전원(주)	서동진 염환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수동 70, 4층	건축, 토목
7	(유)신구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강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장자보 3길 58, 4층	건축
8	주식회사 다운에스텍	진선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49, 702호	건축

9	(주)미르엔지니어링	송상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75, 2층	건축
10	(주)대한구조안전기술단 주식회사	정호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금당길 31	건축
11	(유)양호기술	송양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29, 2층	건축
12	(주)강한이앤씨	최운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동명로 43-1	건축
13	무안이앤지(주)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청계면 해안로 50, 1층	건축
14	(주)신라이앤씨	신진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삼봉산로21, 204호	건축
15	(주)정진이앤씨	최재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읍 남문길52, 3층	건축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른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5항에 따라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여수시 공고 제2026-2311호, 2026. 7. 24.]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 “예정가격”이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의 $97 \pm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기평가서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다만,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총 관

구 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30점	20점	10점
입찰가격	70점	80점	90점

2.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점검비용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2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2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8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80 - 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계	100점	

※ 비고 :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2과 같다.

[별표2] (점검비용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점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 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세부평가방법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가. 참여업체	50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1) 신용도	12				
(가) 재정상태 건실도	5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4.0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나) 점검·진단 평가결과	4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 정지	3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2) 수행실적	30				
(가)실적(건수)	1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나)실적(금액)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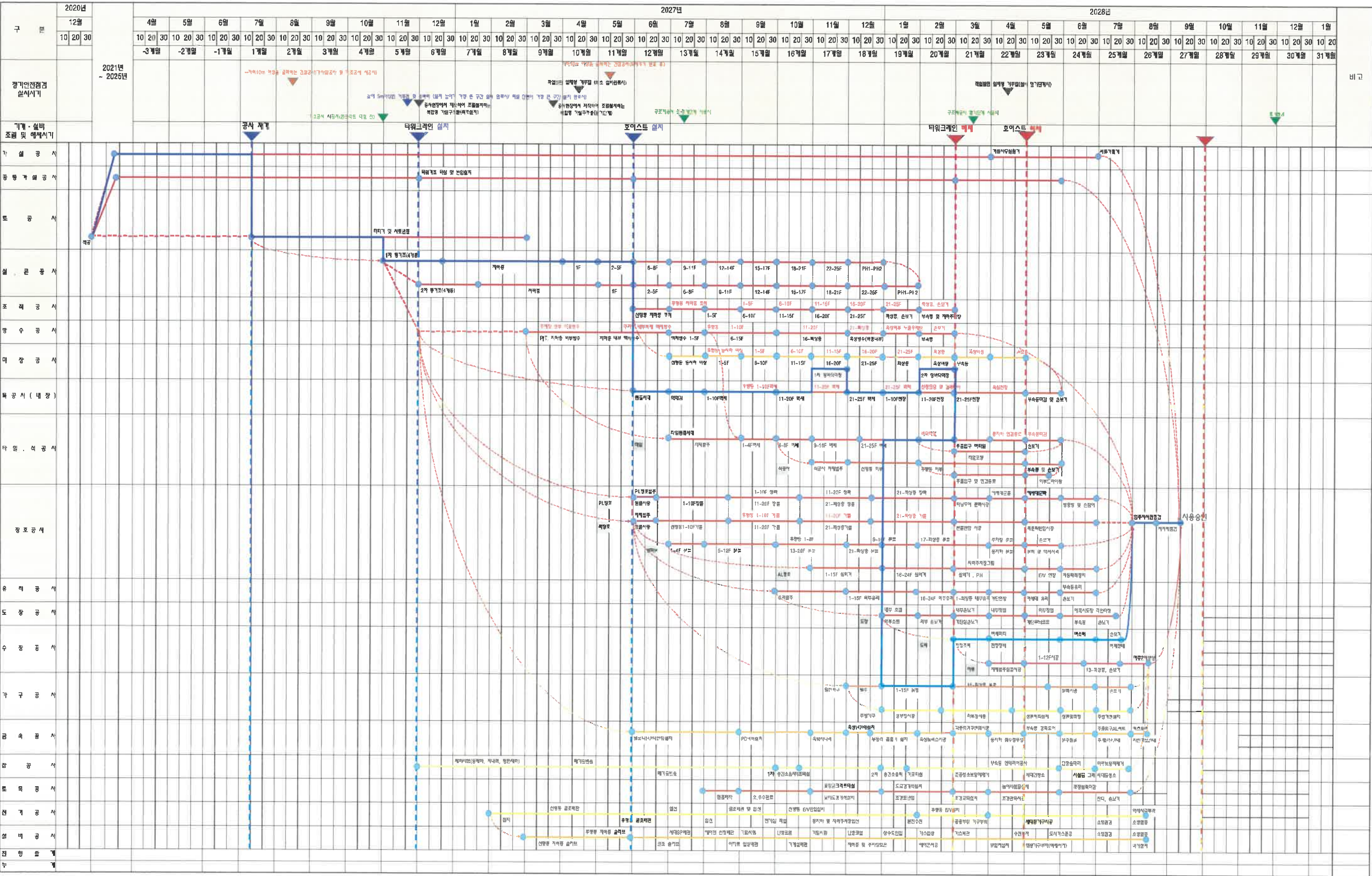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금액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금액 × 0.8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15.0</td><td>14.3</td><td>13.6</td><td>12.9</td><td>12.2</td></tr></table> <table><tr><td>5억원이상</td><td>5억원미만 4억원이상</td><td>4억원미만 3억원이상</td><td>3억원미만 2억원이상</td><td>2억원미만</td></tr><tr><td>15.0</td><td>14.3</td><td>13.6</td><td>12.9</td><td>12.2</td></tr></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금액에 1.5배를 적용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0	14.3	13.6	12.9	12.2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5.0	14.3	13.6	12.9	12.2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0	14.3	13.6	12.9	12.2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5.0	14.3	13.6	12.9	12.2																		
(3) 업무중첩도	5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tr><td>1개소 이하</td><td>2개소</td><td>3개소</td><td>4개소 이상</td></tr><tr><td>5.0</td><td>4.0</td><td>3.0</td><td>2.0</td></tr></table>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5.0	4.0	3.0	2.0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5.0	4.0	3.0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3																					
(가) 기술개발 실적	1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산출기준 : (건설신기술 건수×0.5)+(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수×0.3)+(건설기술에 대한 실용신안×0.15) <table><tr><td>구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r><tr><td>특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나) 투자실적	2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따라 평가 <table><tr><td>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d>1%미만 0.5%이상</td><td>0.5%미만</td></tr><tr><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0.5%미만	2.0	1.8	1.6	1.4	1.2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0.5%미만																		
2.0	1.8	1.6	1.4	1.2																		

나.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 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table><tr><td colspan="2">건축구조기술사</td><td colspan="3">기타 자격없음</td></tr><tr><td colspan="2">6.0</td><td colspan="3">4.5</td></tr></table>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2) 경력	7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table><tr><td>10년이상</td><td>10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7년이상</td><td>7년미만</td></tr><tr><td>7.0</td><td>6.5</td><td>6.0</td><td>5.5</td><td>5.0</td></tr></table>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5	6.0	5.5	5.0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5	6.0	5.5	5.0												
(3) 실적	12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12.0</td><td>11.4</td><td>10.8</td><td>10.2</td><td>9.6</td></tr></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1.4	10.8	10.2	9.6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1.4	10.8	10.2	9.6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5) 업무중첩도	2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tr><td>1개소 이하</td><td>2개소</td><td>3개소</td><td>4개소 이상</td></tr><tr><td>2.0</td><td>1.5</td><td>1.0</td><td>0.5</td></tr></table>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2.0	1.5	1.0	0.5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2.0	1.5	1.0	0.5													

다. 참여기술자	20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table><tr><td>고급 이상</td><td>중급</td><td>초급</td></tr><tr><td>6.0</td><td>5.0</td><td>4.0</td></tr></table>					고급 이상	중급	초급	6.0	5.0	4.0				
고급 이상	중급	초급														
6.0	5.0	4.0														
(2) 경력	6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table><tr><td>7년이상</td><td>7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6.0</td><td>5.5</td><td>5.0</td><td>4.5</td><td>4.0</td></tr></table>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5	5.0	4.5	4.0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5	5.0	4.5	4.0												
(3) 실적	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5.0</td><td>4.7</td><td>4.4</td><td>4.1</td><td>3.8</td></tr></table>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7	4.4	4.1	3.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7	4.4	4.1	3.8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여수 안산동 1단지 현장 예정 공정표

현장명 : 여수안산동 1단지 신축공사
공사기간 : 2020년 12월 31일 ~ 2027년 10월 31일 (93개월)



돌산읍 신기항 내 방치선박 제거 공고

우리 시 돌산읍 신기항 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방치선박이 어항 이용의 효율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장애물 등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026-2789호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7. ~ 2026. 9. 16. (10일간)

2. 위 치 : 돌산읍 신기항 내 어항구역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방치선박 3척

4. 장애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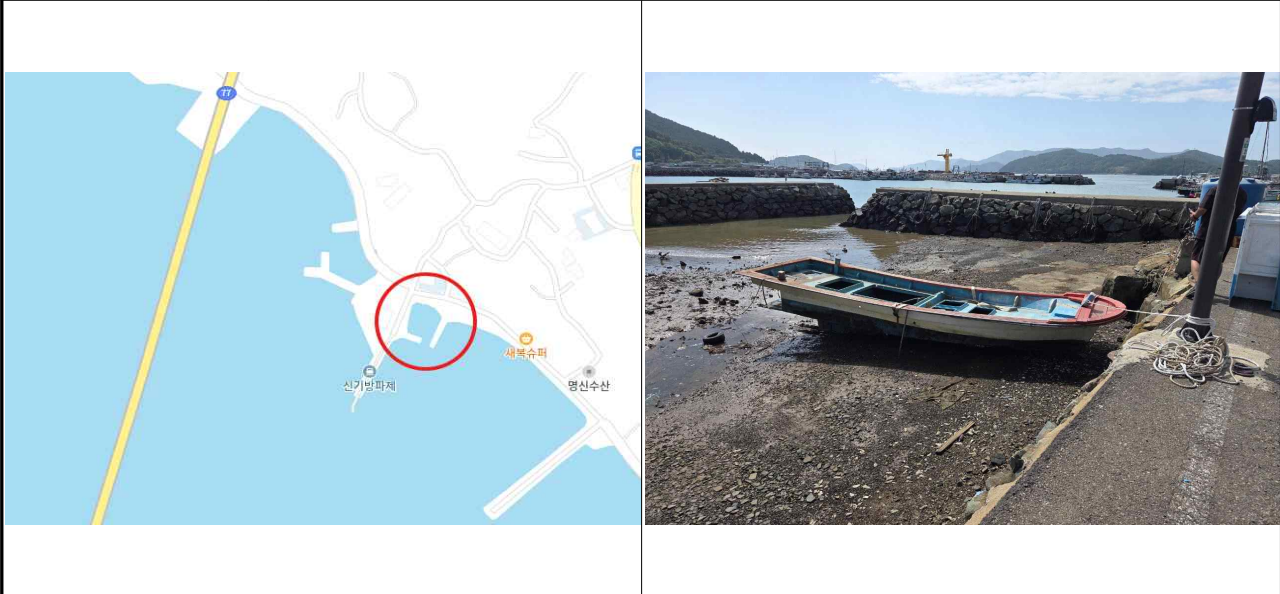
나. 아울러, 어항 내에 장애물을 방치한 행위자(소유자 파악 시)에 대하여는 「어촌·어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1111-16 인근(신기항)		
적치물 종류	방치선박		
어항관리청	여수시	어 항 분 류	지방어항
처리 예정일자	2026년 9월 16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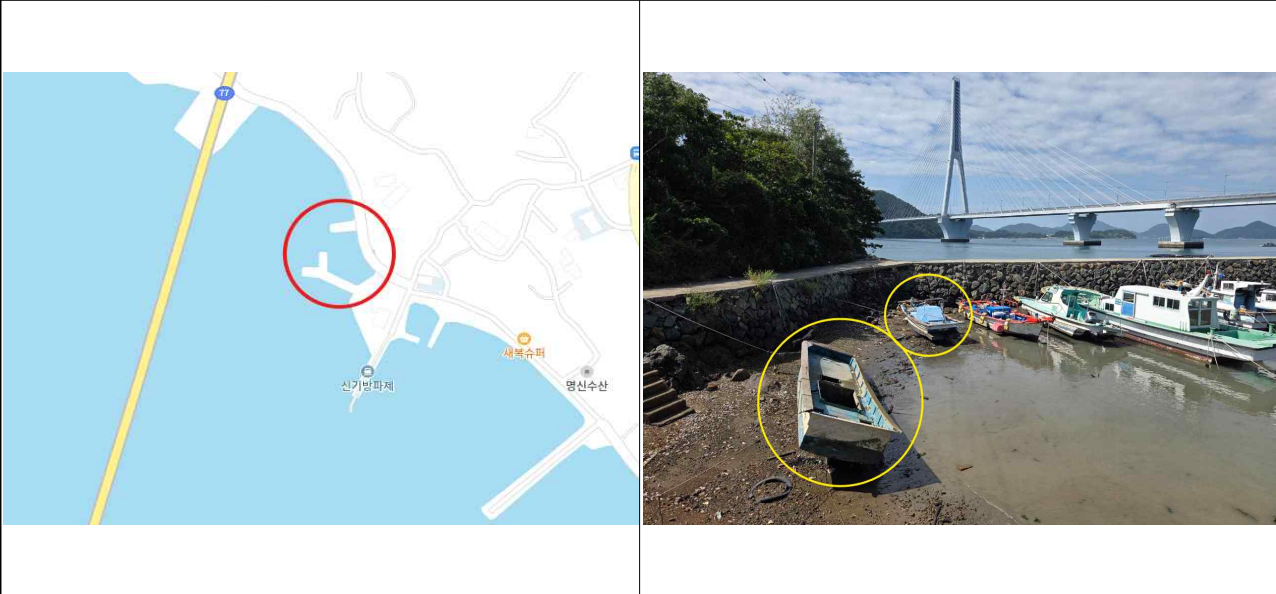
위 장애물(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9월 16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여 수 시 장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적치장소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1134-2 인근(신기항)		
적치물 종류	방치선박		
어항관리청	여수시	어 항 분 류	지방어항
처리 예정일자	2026년 9월 16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장애물(적치물)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9월 16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여 수 시 장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4.

여 수 시 장 (인)

1.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폐지)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폐지		전남광주동합특별시 여수시 통제영5길 10-6	20260902	건축물멸실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동합특별시 여수시 호명동 122-2	전남광주동합특별시 여수시 호명6길 71	20260904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동합특별시 여수시 요도동 1048	전남광주동합특별시 여수시 요도1길 25-4	20260904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동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538-2	전남광주동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장전길 39-5	20260904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동합특별시 여수시 중앙동 668-1	전남광주동합특별시 여수시 통제영5길 10-6	20260904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동합특별시 여수시 화장동 773-3	전남광주동합특별시 여수시 화산로 30	20260904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동합특별시 여수시 광무동 1040	전남광주동합특별시 여수시 광무남4길 42	20260904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입 법 예 고 문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4.

여 수 시 장

1. 제정 이유

- 시정 현안과 주요 정책 관련 폭넓은 시민 의견 수렴과 숙의·토론 등 공론화를 통해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조례의 목적, 시민, 시민주권, 공론화 등 용어 정의
- 시민주권위원회 운영 기본원칙(안 제3조,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연간 운영계획(안 제5조, 제6조)
-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안 제7조부터 제16조)
 -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회의 운영 등
- 시민 숙의·공론화(안 제17조부터 제21조)
 - 온라인 시민참여(Y-voting), 여수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
- 비용 등 지원(안 제22조부터 제26조)

4.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정 목적(안 제1조)
- 위원회 구성과 회의 운영(안 제2조부터 제7조)
 - 위원 모집·선정, 안건 배분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세부사항
- 온라인 시민참여(안 제8조부터 제9조)
 - 실시계획과 문항 수립, 조사결과 처리 관련 세부사항
- 여수시민회의(안 제10조부터 제14조)
 - 여수시민회의의 운영 및 정책 제안서 작성 세부사항
- 서식 등(안 제15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6. 9. 4. ~ 9. 28.(24일간)

6.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별첨

7.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시민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596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 받는 사람 : 여수시장(시민소통담당관)
- 전 화 : 061-659-3488
- 팩 스 : 061-659-5805
- 이 메 일 : lyj0228@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2-1)

☐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2-2)

☐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시행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

제2조(위원의 모집·선정) ① 위촉직 위원은 공개 모집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공개 모집의 공고, 신청,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시민주권실행분과위원회, 미래도시경제분과위원회, 매력도시조성분과위원회를 두며, 소관 분야는 별표와 같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 정수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 간사, 서기는 위원회 운영계획, 회의 일정, 접수 안건의 분과 배정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② 시민주권실행분과위원회는 온라인 시민참여(Y-voting)의 실시계획과 조사 문항 및 여수시민회의의 시민참여단 구성, 숙의자료의 균형성, 숙의·토론 운영계획 등을 검토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안전의 제출 및 처리) ① 위원회의 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관·과·소 장의 요청
 2. 공동위원장의 직권 상정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
 3. 분과위원회 의결
 4. 국민신문고, 시민소통광장 등에 접수된 시민 제안
- ② 간사는 제출된 안전의 형식과 소관 등을 검토하고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에 배정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안전을 검토하여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시민 숙의·공론화 적용기준 및 제외사항) ① 전체회의는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민 숙의·공론화 기구의 구성·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민 숙의·공론화 기구의 안전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재판·감사·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 또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시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법령에 따라 다른 위원회나 기관이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6.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사업으로서 변경에 따른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항
7. 재난·안전 등 긴급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8. 폭력 또는 신체적 위해의 구체적인 위험 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숙의 절차를 확보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항

제7조(회의 통지 및 회의록) ①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안전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온라인 시민참여(Y-voting)

제8조(실시계획 및 문항) ① 전체회의가 온라인 시민참여(Y-voting)의 실시를 의결한 경우 간사는 조사 목적, 참여 대상과 방법, 설문 문항, 조사 기간, 중복참여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결과 공개 방법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② 설문 문항은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아니하도록 중립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찬반이 대립하는 안건은 각 대안의 주요 논거를 균형 있게 제시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참여자 수, 성별·연령·지역·직업별 참여 현황, 문항별 응답 결과 및 조사의 대표성·해석상 한계를 포함하며, 조사 종료일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온라인 시민참여와 여수시민회의를 함께 실시한 경우 조사 결과는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제4장 여수시민회의

제10조(운영계획) ① 전체회의에서 여수시민회의의 구성·운영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여수시민회의 의제 및 시민이 판단할 핵심 질문
2. 운영기간
3. 시민참여단의 구성기준과 직접 이해관계자의 범위
4. 온라인 시민참여 병행 여부
5. 해당 소집요건과 판단 사유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 안건 설명 및 숙의토론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 시민 정책 제안 작성 절차, 층화 무작위 추출을 통한 시민참여단 구성,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완 방법, 숙의·토론 자료 작성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③ 수립된 운영계획은 시민주권실행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제11조(시민참여단의 자격상실) ① 시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안전 설명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숙의토론에 2회 연속 불참한 경우
3. 다른 시민의 자유로운 숙의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직접 이해관계가 뒤늦게 확인되거나 허위자료 제공 또는 외부의 지시에 따라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비밀 또는 다른 시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제12조(숙의의 공정성) ① 숙의토론 자료는 찬성·반대 등 각 대안의 주요 논거를 균형 있게 포함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 이해관계자는 자료제출·의견진술·질의응답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단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 숙의·토론은 재적 시민참여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그 과정과 기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최종 의견조사 및 시민 정책 제안) ① 시민참여단은 제10조에 따른 운영계획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최종 의견을 확정한다.

② 시민 정책 제안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다.

제14조(제안서 상정 및 재검토) ① 간사는 시민 정책 제안이 작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체회의에 상정하며, 위원회는 조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채택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시민 정책 제안의 채택과 재검토 절차가 끝나거나 운영기간이 만료된 때 활동을 종료한다.

제15조(서식)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주권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3. 정책 제안서: 별지 제3호서식
4. 정책 제안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과위원회 소관 분야

분과	소관 분야
시민주권실행분과	시민주권, 기본사회, 시민참여, 기획·재정, 행정혁신, 자치분권, 청년·인구, AI·디지털, 재난안전
미래도시경제분과	산업, 지역경제, 도시·건설, 교통·도로, 해양수산, 농업, 지역개발
매력도시조성분과	문화·관광·체육, 복지, 의료·보건,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교육, 기후환경·녹지, 상하수도

【별지 제1호 서식】 시민주권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지원 신청서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직업				
소속 기관·단체	기관·단체명			
	직위(직책)			
주요 경력	소속	직위(직책)	기간	비고
			. . ~ . .	
기타 특기사항				
희망분야 (중복표시 가능)	☐ 기획·행정, 기본사회, 자치분권, 청년·인구, AI·디지털, 재난안전			
	☐ 산업, 지역경제, 도시·건설, 교통·도로, 해양수산, 농업, 지역개발			
	☐ 문화·관광·체육, 복지, 의료·보건,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교육, 기후환경·녹지, 상하수도			
위와 같이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지원 신청하오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 부착) 1부. 2.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동의서 1부. 3. 자격증명서류(자격증, 재직(경력)증명서, 기관표창 사본 등) 각 1부.			
제출방법	1. 우편: 596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시청로 1, 시민소통담당관 (직접 방문 접수 가능) 2. 이메일: 3. 팩스: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여수시(시민소통담당관)는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위원 공개 모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 응모 자격 적정 여부 확인 및 위원 선정 심사
- 나. 선정 결과 통보 및 위원 위촉
-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안내·연락 및 수당 지급 등 위원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희망분야
- 소속 기관·단체명 및 직위(직책), 주요 경력, 기타 특기사항, 자격·경력·표창(수상) 증빙자료
- ※ 수집 방법: 서면(우편,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3. 보유·이용 기간

- 위원 공개 모집 및 선정 과정 종료 시까지
- ※ 위촉된 위원은 임기 만료 시까지

4.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모 접수 및 선정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응모에 따른 자격 적정여부 확인 및 위원 선정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회의록

0000년 제0차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회의록

일시	. . . () 00:00			장소	
참석	정원	참석	불참	(불참)	
상황					
진행순서					
발언자		발언내용			
사회자		-			
공동위원장		-			
관련 부서장		-			
사회자		-			

안건번호	
안건명	
참석자 A	-
참석자 B	-
참석자 C	-

【별지 제3호 서식】 정책 제안서

관리 번호	전체/회의 - 00	제안 유형		제안 일자	0000. 00. 00.
제안명		관련 분과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명	관련 부서	

☐ 안건 개요

- 신명조, 크기 15pt, 장평 95%, 자간 - 10%
-

☐ 문제점

-
-

☐ 검토 결과

-
-

소 수 의 견

- ◆ (발언자명) 의견 내용
- ◆
- ◆

☐ 정책 제안

-
-

【별지 제4호 서식】 정책 제안 관리카드

관리 번호	전체회의 - 00	제안명	구분	전부 수용/ 일부 수용/ 장기 검토/ 미수용	
담당 부서	000000과장 000000팀장 담당자 000(☎00000)			검토 일자	0000. 00. 00.
안건 개요					
제안 요지					
검토 결과	☐ 전부 수용 ☐ 일부 수용 ☐ 장기 검토 ☐ 미수용				
검토 의견					
조치 계획					
이행 상황	☐ 미착수 ☐ 추진 중 ☐ 중단 ☐ 완료 ☐ 완료(계속)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시민주권 활성화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시민 숙의·공론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시민주권”이란 시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의 계획·결정·집행·평가 과정 등에 시민이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공론화”란 시의 주요 정책 또는 현안에 대하여 시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숙의(熟議)하여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여수시민회의”란 공론화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숙의를 거쳐 시민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임시 시민숙의기구를 말한다.
5. “시민참여단”이란 여수시민회의의 숙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시민을 말한다.
6. “시민 숙의·공론화 기구”란 여수시민회의와 온라인 시민참여 등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하여 시민의 숙의 또는 의견 수렴을 수행하는 기구 또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론화와 시민 숙의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 등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여수시민회의 등 시민숙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대표성, 숙의성, 포괄성,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시정의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고, 시민주권위원회와 시민 숙의·공론화 기구가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① 시민참여 및 공론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민 의견 수렴 또는 공론화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와 미리 협의한다.

제6조(연간 운영계획) ① 시장은 매년 시민주권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주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견을 들어 확정한다.

② 연간 운영계획에는 시민주권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 시민제안 발굴, 온라인 시민참여 및 여수시민회의 운영, 정책 제안의 수용과 환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2장 시민주권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주권에 기반한 시정 운영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에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1. 시정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갈등·쟁점 사항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시민참여의 실시 여부와 조사 안전에 관한 사항
4. 여수시민회의의 구성·운영 및 안전 회부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의 정책 제안과 여수시민회의가 제출한 시민 정책 제안의 채택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정책 제안의 시정 반영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성별·세대 등 계층별 대표성을 갖거나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모집·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회의 주재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불참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5. 품위손상이나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2조제3항의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회의) ①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분과위원회가 안건의 상정을 요청하는 경우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회의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안건의 전문적·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정책과제·시민제안 검토, 정책 제안서 작성, 전체회의 상정 안건의 선정 및 정책 제안 이행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종류·구성·소관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주권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장 시민 숙의·공론화

제17조(온라인 시민참여)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시민소통광장을 활용한 온라인 시민참여(Y-voting)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온라인 시민참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결이나 주민투표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정책 제안과 여수시민회의 숙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③ 시장은 온라인 시민참여의 조사 문항, 참여 인원, 참여자 특성,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 ④ 온라인 시민참여의 실시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민 숙의·공론화 기구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시의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민 숙의·공론화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민생활에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시민 숙의·공론화가 필요한 사항
2.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갈등 조정 또는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
3. 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이나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시의 재정예 중대한 부담을 수반하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서 폭넓은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시민 숙의·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의결을 하는 경우 공공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시의 재정부담, 안전을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 사항, 쟁송·감사 진행 중인 사항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안전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수시민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사안별로 구성하며, 구성일부터 4개월 이내에 운영을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여수시민회의의 숙의·토론은 대면 회의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안전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구성·운영을 의결할 때 정한다.

제19조(시민참여단) ① 여수시민회의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의 시민 100명 이내의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한다.

- ② 시민참여단은 여수시 시민소통광장 패널, 공개 모집 신청자 등 일반 시민 중에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③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보상 대상자, 사업관계자 및 관련 단체의 임원은 시민참여단이 될 수 없다. 다만, 자료제출·의견진술·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시민참여단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하되, 성별·연령·거주지역 등 구성 분포는 공개할 수 있다.
- ⑤ 시민참여단의 선정 절차, 자격상실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민 정책 제안) ① 여수시민회의는 숙의·토론 결과를 종합하여 시민 정책 제안(이하 “제안서”라 한다)을 작성하고 확정한다. 제안서에는 숙의 절차, 주요 쟁점, 숙의 전후 의견 변화, 최종 결과, 이행 조건 및 소수의견을 포함한다.

② 위원회는 여수시민회의가 확정된 제안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채택하고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여수시민회의에 1회에 한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시민참여단 선정 또는 숙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4. 시민참여단의 최종 의견과 제안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

제21조(정책 제안의 처리 및 환류) ① 시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민 정책 제안을 관계 법령과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정책 제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부 수용, 일부 수용, 장기 검토 또는 미수용으로 구분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부 수용, 장기 검토 또는 미수용으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와 대안 또는 향후 검토 일정을 위원회에 설명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④ 시장은 정책 제안의 처리 결과와 이행 상황을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시민참여단 및 관계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사무 위탁) 시장은 위원회 및 시민참여단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에게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의 방침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시민주 권위원회 및 여수시민회의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 만료 당시 운영 중인 여수시민회의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위원회의 직무는 후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계한다.

제3조(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위촉일부터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